

언론중재

2013 봄호 통권 126호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인쇄 2013년 3월 27일
발행 2013년 4월 1일
등록 1981년 10월 14일
등록번호 서울중바00002
발행인 권 성
편집인 오광건
인쇄인 이민성
발행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전화 02) 397-3114
FAX 02) 397-3069
www.pac.or.kr
편집 · 인쇄 (주)성우애드컴

편집위원
손영준 서울제3중재부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이영진 서울제8중재부
(변호사)
강선임 외부위원
(AnC 미디어 실장)
송상근 외부위원
(동아일보 교육복지부장)

- * 본지는 집자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합니다.
- * 이 책에 게재된 원고의 내용은 우리 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에 수록된 글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언론중재

2013봄호 통권 126호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C O N T E N T S

계간 언론중재

Vol. 126 Spring 2013



06



32

Focus on World Media

- 06 디지털시대 신문산업의 생존 분투기 _이순녀
- 14 SNS, '소셜 미디어'도 '미디어'다 _장정훈

칼럼

- 22 보도와 외설 사이 _양선희

사건, 그 후

- 24 머독 제국의 종말과 해킹게이트 _김성해
- 32 아덴만 영웅들의 인질 구출 작전 _이정훈

토론회 현장스케치

- 40 CCTV에 찍힌 사랑의 매 _김문중

판례토크

- 44 명예훼손은 좁게, 사생활 보호는 넓게 _양재규

Movie with Legal Mind

- 48 법률가가 본 영화, '7번방의 선물' _양려원



54



78

조정중재 현장

54 '언론보도 손해배상 사건을 전담한다' _박성희

기고문

58 초년생 사건기자가 고민해 본 디지털시대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기사 삭제 범위는?
_이대희

72 '공인'에 대한 취재 · 보도와 관련한
언론의 자유와 책임 _박도윤

해외통신원 기고

78 언론통제와 언론자유의 갈림길에 선 중국
_온기홍

언론분쟁 노트

84 KBS의 고충처리, 이것이 다르다! _윤종배



글. 이순녀
서울신문 국제부 차장

디지털시대 신문산업의 생존 분투기

“시대가 변했고
인쇄매체는
죽어가는 매체”라며
“나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독자들이
읽고 보기를 원하는
기사를 전달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답한다.



롭델과 인터뷰를 통해 켄트의 이직 소식을 첫 보도하자 영국 BBC와 프랑스 AFP통신사, 미국 인터넷매체 허핑턴포스트 등 유력 매체들이 잇따라 속보를 전했다.

아닌 게 아니라 켄트가 사표를 던지기 전 편집국장과 벌이는 설전은 현재 신문 저널리즘이 처한 위기를 고스란히 대변하는 것이었다. 켄트가 흥미 위주의 가십성 기사에 치중하는 편집방향에 불만을 토로하자 편집국장은 “시대가 변했고 인쇄매체는 죽어가는 매체”라며 “나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독자들이 읽고 보기를 원하는 기사를 전달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답한다.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정보를 빨리 얻기 위해 기자가 됐던 켄트는 자신이 추구하는 저널리즘의 이상과 언론 현실의 간극이 갈수록 벌어지는 것에 절망해 신문사를 박차고 나온다.

이에 대해 ‘슈퍼맨’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는 DC코믹스는 성명을 통해 “켄트의 이직은 저널리즘과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균형, 뉴미디어의 역할, 시민 저널리스트의 부상 등 현대사회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켄트의 이직 이후 행보도 흥미롭다. 롭델은 USA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클라크는 다른 언론사에 재입사하기보다 허핑턴포스트(Huffington Post) 같은 인터넷 매체의 블로거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또한 디지털 시대에 변화된 미디어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1

미국 슈퍼히어로물의 원조인 만화 ‘슈퍼맨’의 주인공 클라크 켄트는 악당이 활개를 펴는 위기의 순간마다 특유의 꼴꼴이 패션을 자랑하며 초능력을 발휘하지만 평소에는 데일리플래닛(Daily Planet) 신문에 근무하는 온순한 기자이다. 그런데 더는 데일리플래닛에서 일하는 그를 볼 수 없다. 2012년 10월에 발행된 ‘슈퍼맨’ 최신호(13호)에서 켄트가 신문에 사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켄트는 1938년 첫 연재 당시부터 정체를 숨기고 기자로 활동하는 것으로 설정됐으니 70여년 만에 이직을 감행한 것이다.

재밌는 건 만화 속 가상인물인 켄트의 이직을 전 세계 미디어들이 ‘저널리즘의 위기’와 엮어 주요 뉴스로 소개했다는 점이다. 미국 일간 USA투데이(USA Today)가 ‘슈퍼맨’ 13호 발행 하루 전인 10월 22일 ‘슈퍼맨’의 작가 스콧



‘슈퍼맨’ 13호 ©DC코믹스

#2

1980~90년대에 대학을 다닌 이
들이라면 뉴스위크(Newswk)

나 타임(Time) 같은 영문 시사주

간지 한 권쯤 가지고 다녔던 기억이 있을 것이
다. 영어공부의 필독서로 통할 만큼 인기가 많
기도 했지만 대학생 신분을 과시하기 위한 용
도로도 애용됐다. 얇은 종이에 인쇄된 뉴스위
크와 타임은 돌돌 말아서 한손에 들고 다니기
도 편했다. 하지만 이제 더는 뉴스위크를 들
고 다닐 수 없게 됐다. 오랜 경영난에 시달려
온 뉴스위크는 2012년 12월 31일자를 마지막
으로 인쇄판 발행을 중단하고 온라인 전용 유
료 매체로 변신했다.

미국을 대표하는 시사주간지인 뉴스위크가
인쇄판을 포기한다는 소식은 전세계 언론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다. 인터넷의 급격한 발
전으로 신문과 잡지 등 인쇄매체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약해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80
여년 역사를 가진 뉴스위크의 인쇄판 폐간은

종이신문(잡지)시대의 종언을 고하는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33년 타임의 국제뉴스 편집장이었던 영
국 언론인 토머스 마틴에 의해 창간된 뉴스
위크는 심층 보도와 수많은 특종으로 전 세계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1961년에는 유력
지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에 인수
돼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 1990년대까지 전성
기를 누린 뉴스위크는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인쇄판 판매 부수가 급격히 줄고, 광고 수익도
급감하면서 경영난에 시달렸다.

워싱턴포스트는 2010년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며 뉴스위크의
매각을 공식 발표했다. 그해 8월 음향기기 업
계의 거물인 시드니 하먼은 뉴스위크의 부채
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1달러에 매입한 뒤 인터
랙티브코퍼레이션(IAC)이 소유한 온라인 매체
더데일리비스트(The Daily Beast)와 뉴스위크
를 합병하고 운영권을 IAC그룹에 넘기는 등 안



뉴스위크 마지막 인쇄판
(2012년 12월 31일자)

간힘을 썼지만 끝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인쇄판 발행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미국 신문 발행부수 조사기관인 ABC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1년 뉴스위크의 유료 발행부수는 316만 부 수준이었으나 2012년 6월 말에는 152만 부로 반토막났다. 광고 매출도 2011년 1억 4,100만 달러로, 2007년에 비해 70% 가량 줄었다.

위의 두 사례는 디지털 시대에 신문산업이 처한 혹독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이다. 정보기술(IT) 매체와 스마트기기 확산에 따른 오프라인 구독자 감소와 경기불황과 맞물린 광고 매출의 지속적 하락세는 전통 언론 매체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뉴스위크에 앞서 미국 3대 시사주간지 중 하나였던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는 이미 2008년에 인쇄판 발행을 중단했다. 100년 전통의 보스턴 지역 일간지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hristian Science Monitor)도 2009년 초 종이신문 발행을 중단하고 온라인 매체로 전환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전역의 지역신문 1,400여개 가운데 절반가량이 문을 닫은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의 언론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프랑스의 2대 경제지 라트리뷴(La Tribune)은 경영위기를 버티지 못하고 2012년 1월 30일자로 신문 발행을 중단한 뒤 온라인으로만 기사를 내고 있다. 한때 최대 석간신문의 지위를 자랑했던 프랑스수아르(France Soir)는 이보다 앞서 2011년 말에 종이판 시대를 마감한 뒤 온라인으로 전환했으나 2012년 7월 결국 파산했다. 지난 10년간 프랑스 주요 일간지의 판매

부수는 평균 20% 줄어들었다.

독일 신문업계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의 독일어판(Financial Times Deutschland)은 2012년 12월 7일을 마지막으로 폐간됐고, 독일 10대 일간지에 속하는 프랑크푸르터룬트샤우(Frankfurter Rundschau)도 2012년 12월 파산 신청을 했다. 독일 신문발행인협회(BDZV)에 따르면 독일의 총 신문발행부수는 2000년 2,400만 부에서 2011년 1,890만 부로 약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스페인에서는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신문인 엘파이스(El País)를 소유한 미디어그룹이 2012년 11월 직원 466명 중 3분의 1을 해고했다. 이에 앞서 전국지 푸블리코(Publico)는 2012년 2월 24일자를 끝으로 종이신문 발행을 중단하고 소수 직원들이 온라인판으로만 발행하고 있다. 스페인 언론노조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8,000명의 기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영국도 예외는 아니다.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의 1년 새 데일리텔레그래프(Daily Telegraph)의 구독자는 12% 감소했고, 더선(The Sun)은 7%, 데일리미러(Daily Mirror)는 6%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에서 2012년 사이 전국적으로 일간지는 25%, 일요판 신문은 30% 가까이 구독자가 감소했다는 집계도 있다. 언론 환경이 악화되면서 유력 일간지 가디언(Guardian)은 종이신문 발행을 중단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도 연초부터 전 세계 신문업계에서 우울한 소식들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다. 69년 전통의

미국 보수주의 주간신문 휴먼이벤츠(Human Events)가 지난 2월 27일 종이신문 발행을 중단하고 온라인판만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휴먼 이벤츠의 발행인 조 구에리에는 “인쇄매체를 학살하고 있는 ‘죽음의 사신’이 문앞에 다다랐다”면서 “폭발적 성장을 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와는 대조적으로 신문은 이제 매우 힘든 산업이 됐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신문사들도 늘고 있다. 미국 최고 권위의 일간지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의 모회사인 뉴욕타임스컴퍼니는 지난 2월 20일 자회사인 보스턴글로브와 보스턴닷컴, 메트로보스턴 등이 속한 뉴잉글랜드미디어 그룹의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컴퍼니는 미디어시장의 변화와 광고시장의 축소로 양대 핵심 브랜드인 뉴욕타임스와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nternational Herald Tribune)을 제외한 지역신문과 어바웃닷컴 등 온라인 사업 부문의 매각을 추진해왔다.

또 다른 유력 언론 매체 시카고트리뷴(Chicago Tribune)과 로스앤젤레스타임스(Los Angeles Times), 볼티모어선(Baltimore Sun)등을 소유한 트리뷴컴퍼니도 이들 3개 신문을 포함해 신문사 8곳을 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847년 시카고트리뷴을 창간한 트리뷴컴퍼니는 8개 일간지 외에 내셔널케이블채널 WGN 아메리카, WGN라디오 등 23개 방송사 등을 소유하고 있다. 트리뷴컴퍼니는 2007년 부동산 재벌 샘 Zell이 83억 달러에 인수했으나 차입매수(LBO) 시도에 따른 여파로 막대한 빚을 진 끝에 2008년 12월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2012년 7월부터 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12월 31일 4년 만에 파산보호 종업을 선언했다.

트리뷴컴퍼니는 올 초 폭스방송과 디스커버리 커뮤니케이션 최고경영진을 역임한 피터 리구오리를 새 CEO로 맞은 뒤 신문사업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상황은 녹록치 않다. 이들 모두 내노라하는 유력지들이지만 10~20년 전의 전성기에 비하면 가치가 10분의 1로 떨어졌다. 미디어 전문가 켄 닥터에 따르면 보스턴글로브(Boston Globe)는 1993년에는 11억 달러에 팔렸지만 지금은 당시의 10%에 불과한 1억 1,000만 달러 정도에 거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필라델피아인콰이어러(Philadelphia Inquirer)를 거느린 필라델피아 뉴스페이퍼 그룹은 2006년 5억 1,500만 달러에 팔렸지만 2012년에는 10분의 1 수준인 5,500만 달러에 재매각됐다. 시카고선타임스(Chicago Sun Times)는 2011년에 17년 전 가격의 11%인 2,000만 달러에 팔렸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헐값이 됐는데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프랑스 AFP통신은 미디어 벤처 컨설턴트 앨런 무터의 말을 인용해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의 뉴스코퍼레이션을 제외하고는 매물로 나온 신문사들을 사려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뉴스코퍼레이션이 로스앤젤레스타임스와 시카고트리뷴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뉴스코퍼레이션은 이를 부인했다.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워런 버핏도 신문사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대형 신문사가 아닌 소도시의 군소신문에 국한돼 있다. 버핏은 지난 3월 4일 CNBC 방송에 출연해 “신문을 사랑하고 앞으로 더 많은 군소신문을 매입할 의향이 있지만 대형신문사 매입에는 관심이 없

다"면서 트리뷴컴퍼니 소유의 대형 신문사 매입설을 일축했다. 버펄은 현재 오클라호마 지역신문 툰사월드(Tulsa World) 인수를 추진 중으로,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미국 중소도시에 기반을 둔 총 28개 일간지를 보유하게 된다. 버펄은 "결속력 있는 공동체에 지역 뉴스를 공급하는 신문사가 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 신문사들은 저마다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가장 큰 흐름은 디지털 콘텐츠의 유료화다. 미국 워싱턴주의 시애틀타임스(Seattle Times)는 올 3월 중순부터 디지털 콘텐츠를 유료화했다. 시애틀타임스는 발행부수가 평일판은 25만 부, 일요일판은 34만 부이고 홈페이지 월 방문자수도 500만 명을 넘는다. 그러나 이런 시애틀타임스도 지난 10년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일반인의 뉴스 접근이 급증하면서 인쇄판 광고가 격감하자 디지털 콘텐츠를 유료화하게 됐다. 데이비드 보드먼 주필은 지난 2월 23일 기사 형식의 사고를 통해 "공짜로 보던 것에 돈을 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지만 시애틀타임스가 지역의 활력과 시민의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중시하는 콘텐츠의 지속적인 생산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을 흡족히 여길 것"이라며 디지털 콘텐츠 유료화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디지털 콘텐츠 유료화는 뉴욕타임스가 가장 먼저 시도했다. 뉴욕타임스는 1997년과 2005년에 유료화를 시도했지만 별 성과 없이 온라인 방문자 수만 줄자 다시 무료화로 돌아왔다. 이후 2011년 3월에 세 번째 도전에 나섰는데

2012년 구독료 수입(9억 5,300만 달러)이 처음으로 광고 수입(8억 9,800만 달러)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면서 디지털 콘텐츠 유료화 전략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디지털 유료화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결합상품으로 월 15달러, 20달러 등 다양한 요금제로 구성됐다. 한 달에 기사를 10건까지는 무료로 보고 그 이상은 돈을 내는 페이월(paywall)방식이다. 미국 ABC가 2012년 10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뉴욕타임스는 온라인 유료 독자가 89만 6,000명으로 오프라인 신문 구독자 71만 7,000부를 앞섰다. 유력 일간지 가운데 온라인 구독자가 오프라인보다 많은 것은 뉴욕타임스가 유일하다. 뉴욕타임스의 2012년 순익은 1억 7,690만 달러로 2011년 5,890만 달러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뉴욕타임스는 2012년 11월 영국 BBC방송 사장 출신인 마크 톰슨을 최고경영자로 선임해 디지털화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톰슨이 BBC의 디지털화를 이끌었다며, 디지털과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그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The New York Times

Save 50% for 26 weeks on unlimited access.
Choose the subscription below that's best for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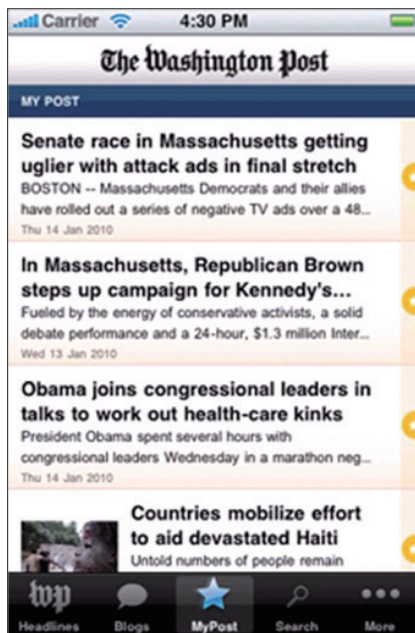
Each offer represents 50% off the regular subscription rate.

NYTIMES.COM + SMARTPHONE APP Unlimited access to NYTimes.com and the NYTimes smartphone app. See details	\$1.88 / WEEK for 26 weeks
NYTIMES.COM + TABLET APP Unlimited access to NYTimes.com and the NYTimes tablet app. See details	\$2.50 / WEEK for 26 weeks
ALL DIGITAL ACCESS Unlimited access to NYTimes.com and the NYTimes tablet and smartphone app. See details	\$4.38 / WEEK for 26 weeks

GET UNLIMITED ACCESS >

Smartphone and tablet apps are not supported on all devices. Does not include e-reader editions, Premium Crosswords or The New York Times Crosswords apps. Prices shown are in U.S. Dollars. Other restrictions apply.

뉴욕타임스의 성공에 힘입어 디지털 유료화는 다른 매체들로도 번지고 있다. 뉴욕타임스 자매지인 보스턴글로브가 2011년 10월 유료화를 시작한 데 이어 로스앤젤레스타임스도 2012년 3월 유료화에 가세했다. 강석 미국 텍사스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행한 「2012 해외미디어 동향」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미국 ABC협회에 등록된 총 1,530여개 신문사 중 약 20%가 온라인 구독 유료화를 실시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의 아이폰용 앱

디지털 콘텐츠 유료화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도 이뤄지고 있다. 온라인 독자들에게 무료 지급 또는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태블릿PC를 제공하는 것이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The Times)는 2012년 말 온라인신문 구독자에게 태블릿PC 구입가를 대폭 할인해주는 보조금제를 도입했다. 영국 일간 파이

낸셜타임스도 2012년 12월 닷새동안 미국에서 1년 정기독자에게 넥서스7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반짝 판촉 행사를 펼쳤다. 뉴욕타임스는 2012년 초 1년 약정의 온라인 구독자에게 반스앤노블의 e-리더기 누크와 태블릿PC 누크 컬러를 할인가로 지원했다.

하지만 디지털 유료화 전략의 성공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아직까지는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정도가 비교적 성공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 ABC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9월 말 기준 월스트리트저널은 종이신문 발행부수가 150만 부, 온라인 유료 독자는 79만 4,000명이다. 전체 발행부수는 1년 전에 비해 9.4% 늘어났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신장세를 보인 이유는 온라인과 모바일 기기 유료 독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온라인 구독자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5만 7,000명이 늘어나 종이신문 감소분 6만 부를 훨씬 초과했다.

그러나 2011년 2월 창간된 미국의 태블릿PC 전용 신문 더데일리(The Daily)는 2년을 채우지 못하고 2012년 12월 15일 폐간됐다. 루퍼트 머독이 초기 비용으로 3,000만 달러를 투입하며 전폭적으로 지원했지만 200만 명을 기대했던 구독자가 겨우 10만 명에 불과해 디지털 유료화 전략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성공 공식은 아니라는 교훈을 남겼다. 종이신문이든 온라인 기사든 독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려면 뉴스의 품질과 희소성 등 탁월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군소 신문들의 틈새 전략도 눈에 띈다. 퓨리서치는 최근 신문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은 미국 지역 신문사 4곳의 성공 전략을 소개했다. ‘아이디어를 돈으로 바꾸는 신문들’이란 보고서에서 이들 4개 신문사는 어떻게 자신들이 디지털 시대에 창의적인 전략을 실행해 수익 창출을 이뤄냈는지를 보여준다.

먼저 플로리다주의 네이플스테일리뉴스(Naples Daily News, 발행부수 4만 5,000여 부)는 판매 인력과 영업 철학 등 판매조직을 재구성하는 것만으로도 2011~2012년 10%의 매출 증가 효과를 봤다. 캘리포니아의 산타로사프레스데모크라트(Santa Rosa Press Democrat, 발행부수 5만 3,000여 부)는 2012년 신사업 아이디어로 광고주에게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교화된 디지털 미디어랩을 만들어 첫해에 25%의 수익을 창출했다. 솔트레이크시티의 데저렛뉴스(Deseret News, 발행부수 9만 1,638부)는 종이신문과 별도로 디지털 회사를 설립한 뒤 2010년 이후 디지털 부문에서 연간 40%씩 수익이 늘고 있다. 종이신문도 심층 보도로 편집 방향을 재설정한 뒤 2011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일간지와 일요판 발행부수가 각각 33%, 90% 증가했다. 테네시주의 콜럼비아데일리헤럴드(Columbia Daily Herald, 발행부수 1만 2,744부)는 2012년 한 해에만 6개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종이신문과 디지털에 접목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퓨리서치는 이들의 성공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디지털과 종이신문을 분리해서 운영하라. 데저렛뉴스의 클라크 길버트 최고경영자는 “신문사업은 악어와 같은 선사시대의 피조

물로 개체 수는 줄어들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디지털사업은 미래를 지배하는 새로운 생물체다. 따라서 이 둘은 분리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말한다. 데저렛뉴스는 미래 성장을 따라잡기 위해 ‘데저렛 디지털 미디어’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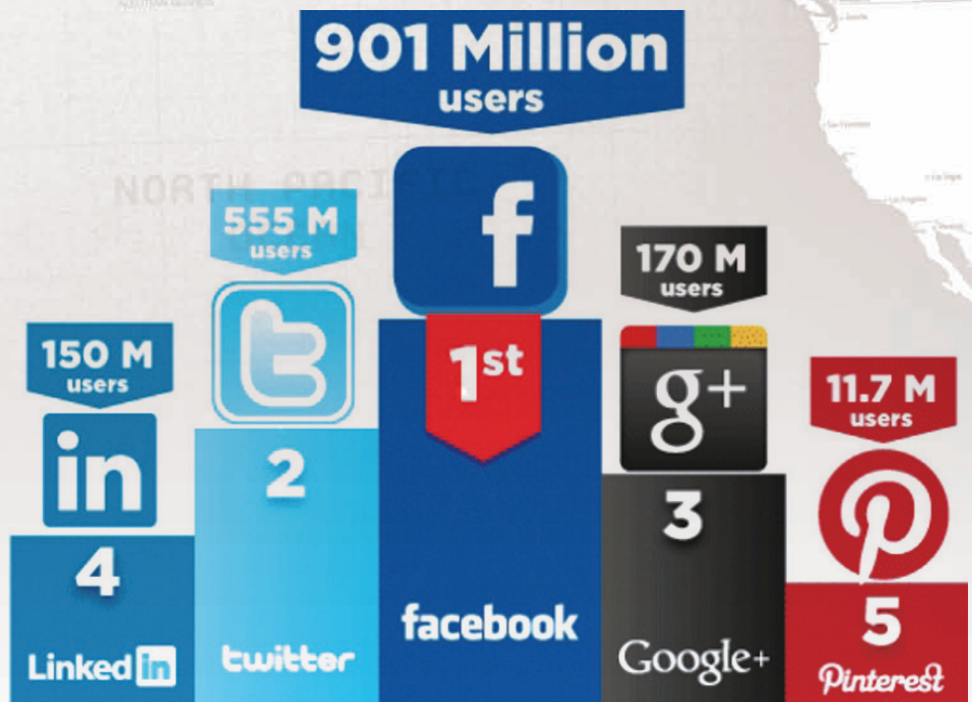
둘째, 조직내 인력과 자원을 활용해 틈새 매체를 발전시켜라. 콜럼비아데일리헤럴드는 최근 수 년간 건강 관련 잡지와 남성 잡지를 성공적으로 창간했다. 올해에는 부동산 잡지도 새로 발간할 예정이다. 마크 팔머 발행인은 “건강 잡지는 수익성이 높으며, 초기 결과도 꽤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셋째,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라. 물문교 소유인 데저렛뉴스는 일반 뉴스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에서 벗어나 종교와 가족 같은 특정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길버트 최고경영자는 “세계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라. 차별화에 실패하면 그저 그런 신문밖에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넷째, 인쇄판을 포기하지 마라. 네이플스테일리뉴스는 “인쇄판이 개별 소비자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가 곧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사양산업 취급받는 대형 신문사들에게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얘기로 들리겠지만 소도시 지역 신문들에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 지역 사회와 유대감을 더욱 강화시켜 지역 현안에 관한 가장 믿을 만한 정보원으로 자리매김한다면 광고주들 대신 유료 독자들에게 의지하는 지속가능한 수익 모델이 창출될 수 있다. ‘역발상의 대가’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군소 신문들 인수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Number of Users on Popular Social Networking Sites



2011년, 영국에선 작은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 소동은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다는 시대적 자각을 일깨워주는 흥미로운 사건이었다. 소동과 함께 영국에서는 ‘슈퍼 인정선 (Super Injunction)’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떠돌았다. ‘슈퍼 인정선’, 굳이 우리말로 해석한다면 ‘사생활보호 금지명령’ 정도가 되겠다. 누군가가 자신의 사생활이 언론에 의해 알려지는 걸 막기 위해 법에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다. 물론 신청인은 주로 유명인사들이다. 법원

은 그들의 신청을 받아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슈퍼 인정선 명령을 내린다. 명령이 내려지는 순간부터는 아무도 신청인에 대한 사생활을 보도할 수 없다. 사실 그런 법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영국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그런데 그런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다. SNS(Social Network Service), 소셜 미디어 때문이었다. SNS가 법의 권위에 도전하고 법을 조롱하는 희대의 사건이었다.



2011년 5월 22일자 선데이헤럴드 1면

사건은 잉글랜드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의 스타플레이어 라이언 킷스와 슈퍼모델 이모겐 토마스와 관련된 것이다. 킷스가 토마스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언론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킷스의 이름을 쓸 수는 없었다. 슈퍼 인정선 때문이었다. 하지만 트위터 세상에서는 그의 이름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슈퍼 인정선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었다. 트위터를 통해 세상이 다 알게 된 유명인사의 이름을 언론은 모른 척 ‘CTB’라는 이니셜로 처리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영국의 법원은 트위터 사용자들에게 경고를 보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슈퍼 인정선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이었다. 스코틀랜드나 다른 나라에서 보도되고 퍼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드디어 메이저 신문으로는 처음으로 2011년 5월 22일자 선데이헤럴드(Sunday Herald)가 1면에 킷스의 눈이 ‘검열(CENSORED)’이라는 검은 띠로 가려진 사진과 함께 ‘섹스 스캔들을 알리지 않기 위해 법원을 이용한 축구선수가 누구인지 모두가 알고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선데이헤럴드는 스코틀랜드에서 발행되는 주요 일간지다. 지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같은 나라나 마찬가지로 스코틀랜드는 독자적인 의회와 법을 가지고 있다. 이 대목에서 영국이 일종의 연방국가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영국 법원은 선데이헤럴드에 대해 어떤 제재도 가할 수 없었다. 해당 법의 힘이 미칠 수 없는 지역에서의 보도, 그리고 국경 없이 날아다니는 트위터, 그 앞에 슈퍼 인정선은 무력했다. 킷스가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트위터는 영국 밖에서 더 널리 퍼져 나가고 있었다. 마치 영국의 법원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말이다.

SNS는 정보를 순식간에 ‘어찌 됐든 모두가

알고 있는 정보'로 만들어 버린다. 대부분의 SNS 사용자들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따위는 고민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권리로 생각한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내 손가락으로 내 기계에다가 뭐라고 쓰든 무슨 상관이야'는 식이다. 사실 그런 표현 욕구는 인간의 DNA 속에 늘 존재해 왔다. SNS는 그런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마음껏 분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기폭제였다. 인간의 표현 욕구는 법 뿐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도 쉽게 통제되지 않는다. 표현 욕구가 SNS를 만났을 때 '통제'는 불가능에 가까워 질수도 있다. 라이언 깅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말이다.

SNS는 Social Network Service의 줄임말이다. 그런데 흔히 '소셜 미디어'라고도 한다. 깅스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소셜 미디어'가 왜 '미디어'로 지칭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어느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말하는 SNS는 가족 또는 지인과 소통하며 관계를 확장하고 유지하는 수단을 넘어 일정 수준의 책임이 수반되는 '미디어' 역할을 하고 있다. 전통적인 미디어와 같은 혹은 그 이상의 영향력과 파괴력을 가지고 말이다. 이제 사람들이 각자 어떤 목적으로 SNS를 이용하고 있는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SNS에 의해 사이버 세상으로 던져지는 정보들은 던져지는 순간 정보를 올리는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유기체처럼 스스로 작동하면서 성장하기 때문이다. 정보를 올린 사람의 통제권에서도 벗어난 상태로 말이다.

전 세계 인구는 70억 명. 그 중 트위터 이용자 수는 5억 5천만 명, 페이스북 이용자는 9억 명으로 올해 10억 명 돌파를 예고하고 있다. 구글이나 마이스페이스 같은 다른 SNS 이용자를 제외하더라도 전 세계 인구의 약 21%가 SNS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장 조사기관 이마케터(eMarketer)는 지구촌 인구 5명 중 1명이 SNS 이용자라는 통계를 내놓고 있다. 컴퓨터나 인터넷 따위와는 거리가 먼 세대를 포함해 그런 신문명을 접할 수 없는 정글이나 사막, 오지에 사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구인들이 SNS를 이용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구'촌'은 이제 '촌'을 넘어 하나의 '가족'이 되어 가고 있다.

수십억 인구가 SNS로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상황이 되고 보니 늘 상존하던 문제들이 한층 더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현의 자유 & 알 권리'로 대표되는 권리와 '사생활 및 초상권 보호 & 명예훼손' 등으로 대표되는 권리가 상호 충돌하는 문제다. 전통적인 미디어는 내·외부적인 원칙과 규칙에 의해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매체로서 기능을 해왔고, 그로 인해 두 권리간의 충돌은 어느 정도 억제될 수 있었다. 그런데 SNS는 원칙과 규칙이 수백, 수천만 명에 이르는 개인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즉흥적으로 결정되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매체라는 것이다. 따라서 SNS의 '활개'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확장시켜주

는 반면 ‘사생활 및 초상권 보호’와 ‘명예훼손’의 위험은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영국에서는 지난 몇 년간 상충되는 두 권리간의 충돌을 볼 수 있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지난 2월, 트위터에 한 살인범, 존 베나블스의 사진이 올라왔다. 그의 사진은 곧 내려졌지만 이미 100명 이상이 퍼나르기(리트윗)를 한 상태였다. 1993년, 베나블스는 로버트 톰슨과 함께 두 살짜리 아이를 살해했다. 아동 살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그는 2001년 석방됐지만 2010년 7월 아동음란물 습득 및 유포 죄로 다시 2년 동안 징역살이를 한다. 그런데 이번엔 법원이 그의 사진을 트위터에 올려 가상세계를 떠돌게 한 트위터 이용자들을 법정 모독죄로 불렀다. 이쯤에서 언뜻 살인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를 떠올릴지 모르겠다. 그러나 트위터 사용자들에게 쏘아붙인 혐의는 다소 엉뚱하게도 ‘법정 모독죄’였다. 트위터에 살인자의 사진을, 그것도 범인으로 입증된 인물의 사진을 올린 것이 어떻게 ‘법정 모독죄’에 해당하는 것일까? 이유는 이러했다. 1993년, 살인을 저지른 당시 베나블스의 나이는 불과 10살이었다. 법원은 그가 어린 아이임을 감안해 극히 이례적인 명령을 내렸다. 시민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서 보호하고, 형을 마친 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일체의 신상정보 노출을 금지시킨 것이다. 실제로 2001년 석방과 함께 그는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이름과 신분을 부여받았

었다. 그런데 트위터 이용자들이 그런 그의 사진을 트위터 상에 올려 신상을 만천하에 공개하였기에 법정 모독죄를 적용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자사의 간판 탐사보도 프로그램 중 하나인 ‘뉴스나이트’를 통해 1980년대에 웨일즈의 한 어린이 집에서 발생했던 아동 성학대 문제를 보도하며, 성학대를 저지른 범인으로 한 정치인을 지목했다. 정확히 말하면 지목은 아니었다. 대략 누구일지 연상할 수 있는 정도의 ‘암시’였다. 이름을 밝히기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트위터에서 터졌다. 트위터를 통해 보수당 국회의원 맥 알파인의 이름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BBC는 프로그램에서 정확히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대중은 쉽게 그의 이름을 떠올렸고 BBC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결국 BBC는 알파인에게 18만 5천 파운드에 이르는 금전적인 배상을 해야 했다(알파인은 BBC에게서 받은 배상금을 어린이 자선 프로젝트인 ‘BBC’s Children In Need’에 기부했다). 알파인은 그의 이름을 트위터에 올린 500여 명의 트위터 사용자와 리트윗을 한 국회의장의 아내 살리 버코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500명 중에는 유명 코미디언과 정통 일간지 가디언의 기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그는 500명의 트위터 이용자에 대한 소송은 취하하고 버코우에 대한 소송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버코우의 트위터는 5만 6천 명의 팔로워에게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알파인은 버코



보수당 국회의원 맥 알파인

우에게 5만 파운드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런 어이없는 경우도 있었다. 2010년 5월 영국 법원은 한 남자에게 385파운드의 벌금과 600파운드의 재판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주인공은 폴 챔버스. 그가 벌금형을 받은 이유는 이러했다. 영국 북부의 돈카스터에 거주하는 그는 출장을 가기 위해 인근 로빈후드 공항으로 향했다. 공항에 도착한 그는 폭설이 내려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화도 나고 달리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답답했던 그는 “공항을 폭파시켜 버리겠다”는 농담을 트위터에 올렸다. 흔히 하듯 화집에 한 농담이었다. 그런데 영국 법원은 2003년 발효된 통신법상 ‘전자통신 위협’ 조항을 들어 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그는 즉시 항소법원에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판결이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벌금은 면했지만 화집에 내뿜은 농담 한마디의 결과로는 가혹한 경험이었다.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도 있었다. 웨일즈의 축구선수 체드 에반스가 19세 소녀를 강간하는 사건이 있었다. 2012년 4월 영국 법원은 그에게 5년형을 선고했다. 판결은 6천 건의 트윗을 발생시켰다. 문제는 그 중 피해여성의 이름을 밝힌 트윗 때문에 발생했다. 영국의 미디어 법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이름을 밝힐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규정은 소셜 미디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트위터 사용자들이 그런 법을 알 리 없었을 터, 그들은 모두 벌금형에 처해졌다.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 모두가 피해자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위법인지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법은 냉정했다.

이번엔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있을 법한 일이다. 축구선수 지동원이 활약했던 '선더랜드'의 팬인 29살 피터 코플랜드는 트위터에 상대 팀인 '뉴캐슬 유나이티드' 선수를 상대로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올렸다. 연이어 흑인선수가 너무 많다는 글도 올렸다. 그의 포스팅에 60여 명이 댓글을 달았고 그 상황을 지켜보던 한 지역신문 기자가 명백한 인종차별적 발언이라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다. 코플랜드는 '인종차별적인 야비한 공격'이라는 죄명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4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영국 경찰 당국은 2008년 이후 지난 4년간 SNS와 관련된 범죄 신고가 780%나 늘었다고 발표했다. 작년 한 해에만 SNS 신고 건수는 4,908건이었고, 이 중 기소된 사람은 653명이었다. 신고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 정도로 신고 건수가 폭증한 것이다. 신고 이유

는 협박, 괴롭힘, 스토킹, 성희롱, 사기 등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그 수단이 SNS였다. 영국 경찰협회 회장 앤디 트로터는 SNS가 '표현의 자유'라는 선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통계로 드러나고 있는 고소, 고발의 남용에 대해 이렇게 경계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소통을 할 권리가 있다. 다소 불쾌하고, 용인되기 어려운 표현이라도 온라인 커뮤니티 자체가 자정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원칙을 정해 경찰의 개입이 최소화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검찰청(CPS :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은 최근 SNS 신고의 남발을 억제하고, 경찰의 개입여부와 관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적시하고 있다.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공격성을 띄고 있거나, 공감을 얻지 못하는 나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기소할 수는 없다. 그러나 특정 개인과 단체를 목표로 폭력적인 협박이 분명한 메시지를 올리거나, 법원이 금지한 정보를 올릴 때에는 기소될 수 있다. 퍼나르기(리트윗)도 처벌 대상이다." 가이드라인은 또 "즉시 글을 내리거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올린 글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 기소를 피할 수 있다. 글을 넓게 퍼트릴 의도가 없었다면 그것 또한 기소 대상이 아니다. 더불어 글이 다양한 사회의 공감을 얻고 있다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

다.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엔 그들의 발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은 만큼 기소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권고도 포함시켰다.

올해 말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발효될 것으로 알려진 개정 「명예훼손에 관한 법」은 실질적인 피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웹사이트 관리자는 경찰이 요구할 경우 명예훼손적인 글을 삭제하고 글을 올린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예로 든 알파인 보수당 의원의 경우 버코우와의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미있는 것은 스코틀랜드의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다소 모호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명예훼손 소송을 하려는 사람들이 스코틀랜드로 ‘소송관광’을 떠날 것이라는 전망도 일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법은 명예훼손에 대해 SNS와 신문 기사를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 영국의 법률 전문가 루크 스칼론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트위터 사용자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잘못을 저지른 공인은 일반인을 고소할 수 없기 때문에 뭐든지 말할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 하지만 누군가를 증오, 조롱, 멸시함으로써 실질적인 해를 끼치면 징역형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법지 않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파나르기(리트윗)도 마찬가지다. 처벌을 받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자신의 글이 진실임을 증명하고, 의견 또한 그런 진실에 입각한 정당한 의견 표명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물론 모르는 사이에 자동으로 리트윗 되었다고 변명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최선의 방법은 진실이라고 밝혀지지 않은 사실은 올리지도, 전달하지도 않는 것이다.”

영국 로펌 위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영국 국민 46%는 증거 없이 루머를 퍼트릴 경우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범죄 관련 법사위원회 의장(Chairman of the Law Society of England and Wales’s criminal law committee)인 이안 켈시는 이렇게 충고한다. “외치기 전에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어라. 아니라면 외치지 마라. 사람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신문과 똑같은 영향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SNS는 미디어다. SNS는 시시콜콜한 개인 사나 생각도 때때로 온 세상의 관심을 끌만한 뉴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뉴스란 무엇인가?’에 대해 ‘무한 확장’된 새로운 정의가 내려지고 있는 셈이다. 이제 SNS는 개인 미디어로서 사회적 책임도 생각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소양과 법률교육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도 하겠다.

보도와 외설 사이

Column



글. 양선희
중앙일보 논설위원

수습기자 시절이었다. 외신부 수습 당시, 부장이 수백 장의 외신사진 견본이 있는 대장을 가져와서 “오늘 해외토픽 사진을 골라보라”고 했다. 증명사진 크기 정도의 사진들이 빼곡한 그 대장에서 한 장을 골랐다. 그런데 다른 선배들은 대부분 다른 사진을 찍는 거였다. 웬 여자가 옷을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진. 나는 그 민망한 사진에 반대했지만 결국 해외토픽은 그걸로 결정됐다.

놀란 건 다른 신문들이 배달된 후였다. 다른 신문들의 해외토픽에도 모두 같은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 수백 장의 사진 중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걸 골랐을까 궁금하기도 했고, 학생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문에 대한 오해가 한꺼번에 깨지기도 했다. 그 오해란 신문 내용이 엇비슷한 건 신문사들이 정부가 지정해주는 '보도지침'에 따라 그대로 신문을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어쨌든 그게 아니라는 걸 확인한 건 기뻐지만, 토픽사진을 골라내는 동일한 안목에 대한 의문은 남았었다.

‘벌거벗은 사람’들에 대한 미디어의 호감은 여전하다. 대놓고 선정적 사진이 실리는 옐로우 매체들은 논외로 하더라도, 주요 일간지들에도 수시로 옷 벗은 사진이나 옷 벗는 얘기가 실린다. 나체 시위와 퍼포먼스, 반라의 패션쇼, 용감하게 옷 벗은 예술가들의 이야기, 가슴을 훤히 드러내고 포토라인에 선 여배우, 외설시비에 휘말린 사건이나 사진에 관한 후속 보도 등. 외설 혹은 선정성 시비를 피해갈 수 있는 알 권리 등의 명분과 기법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기사와 사진엔 독자가 몰린다. 그렇다 보니 미디어를 편집하는 입장에서 이런 보도의 매혹을 뿌리칠 수 없다. 나도 마찬가지다. 내가 온라인 편집국장 당시 러시아 프리다이버 아브세옌코 박사가 북극에 사는 흰 돌고래와 교감을 실험하기 위해 알몸으로 북극바다에 뛰어든 사진을 찾아내 우리 온라인 판의 메인사진으로 걸었던 적이 있다. 당시 북극바다의 수온은 영하 2도였다.

이 사진은 강한 스토리와 아름다운 영상을 동시에 보여주는 보도가치가 있는 대표적인 훌륭한 콘텐츠였다. 이후 다른 인터넷매체들도 모두 받아서 자기 사이트에 걸었고, 다음날 주요 일간지들이 이를 1면 사진으로 실었으며, 얼마 후 우리 기자가 아브세옌코 박사를 전면 인터뷰했고, 또 얼마 후엔 그녀가 우리나라에 초청을 받아 와서 강연을 하기도 했다.

그 사진의 보도가치는 그만큼이었다. 동물과의 교감을 위해 영하 2도의 북극바다에 뛰어든 것도 용기 있는 도전이었다. 하지만 잠수복을 입고 뛰어들었다면 보도거리가 안 된다. 옷을 모두 벗었다는 점, 이것이 극적인 보도 포인트였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 보도가치를 끌어낸 이 포인트는 또 하나의 시비 거리를 제공했다. 이 사진은 선정성 시비에 걸렸다.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신문 기사를 매개하는 캐스트를 운영하고, 온라인매체들은 캐스트에 9개 정도의 기사 제목을 노출해 독자들에게 서비스한다. 그리고 네이버는 거기에 걸린 기사들을 놓고 선정성을 판정하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이 기사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유해하고 선정적’이라며 이익을 제거한 것이다.



그 모니터링단은 '알몸'이라는 단어와 옷을 벗은 사진은, 그게 무엇이든 선정적이라고 이의를 제기하곤 했다.

미디어들은 보도가치가 있는 나체 영상을 찾아다니고, 한 편에선 이렇게 '옷 벗는 건 무조건 선정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극성스럽게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하며, 모두에게 옷을 입히려 한다. 이들의 감시의 눈길은 미디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얼마 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갤러리 옥상에 영국 조각가가 만든 '벌거벗은 남자'라는 고가의 작품을 설치하자 주민들이 작품에 옷을 입히거나 가려두라고 요청해 애먹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일본 시마네현에 있는 한 소도시에서도 이 지역 출신의 사업가가 기증한 다비드상과 비너스상 때문에 논란이 벌어졌다. 민망하니 속옷을 입혀달라는 일부 주민들의 집요한 요청 때문이었다. 물론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는 데에는 이런 사람들의 기여가 한몫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데 옷 벗은 사진은 민망하다고만 보았던 풋내기 수습 기자에서 벗어나 오랜 시간 관련 콘텐츠들을 보면서 느낀 건 인간이 옷을 벗는 행위는 단순히 눈요기, 관심, 선정성, 외설 등의 표피적 언어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나관중 소설 『삼국지』에는 '예형'이라는 인물이 나온다. 땃줄을 끊으면서부터 신동이었으나 세상을 욕하고 막말하는 걸로 한 세월을 보내다 25세에 남의 손에 죽은

천재다. 역사에 기여한 바 없이 잠시 세상에 다녀갔던 이 천재는 그러나 소설에서 꽤 길게 다루어진다. 이런 기행의 천재가 한둘이 아니었을 터인데 어떻게 그만 이렇게 주목을 받았을까.

나는 그 이유를 그가 저항의 방식으로 채택했던 '나체 시위'에서 찾는다. 그는 조조가 자신을 복치는 사람으로 고용하자 연희 자리에서 옷을 훌렁 벗고 복을 치며 시위한다. 그가 나체시위의 원조일 거다. 그는 옷 한 번 벗은 걸로 잊힐 뻔했던 이름을 일으켜 세웠다.

옷 벗는 사람에 대한 인류의 관심은 수그러들지 않는다. 인간에게 옷을 벗어던지고 자유로워지고 싶은 욕망과 옷을 벗은 사람을 훑쳐보고 싶어 하는 욕망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관심에 힘입어 또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는 행위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 아브세렌코 박사가 옷을 벗어던지고 북극의 바다에 뛰어들으로써 세상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어디선가 동물과의 교감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처럼 말이다.

인간이 옷을 벗는 건 종립적인 행동이다. 그러나 그것이 표현될 때는 논란의 한 가운데 선다. 예술이나 외설이냐, 보도의 가치가 있는가 선정적 눈요기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일단 그 행위가 음란한 상상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옷을 음란한 동기에서만 벗지는 않는다. 옷 벗은 사람을 음란하게만 보려는 시각을 거두고, 그들의 몸짓을 보려 한다면 더 많은 인생의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 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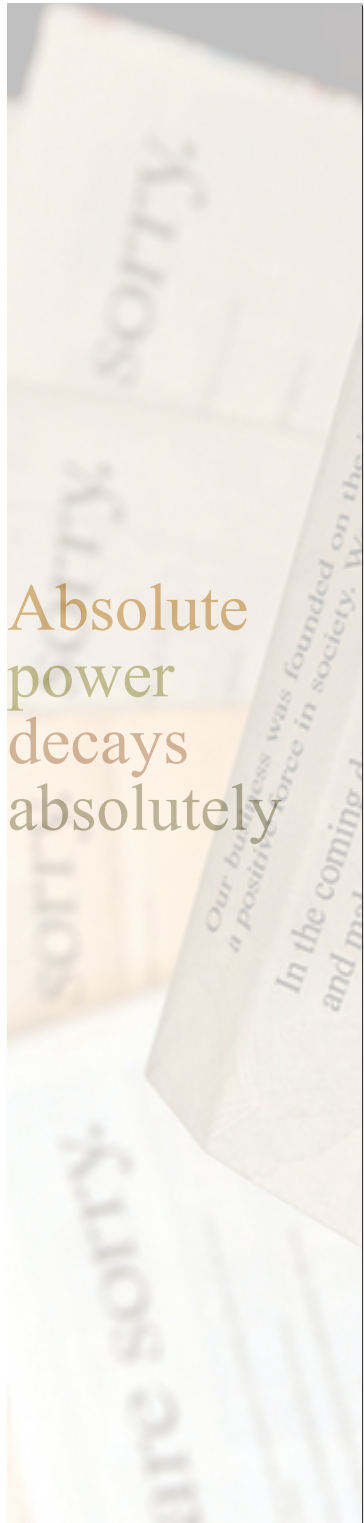
머독 제국의 종말과 해킹게이트



글. 김성해
대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민주주의 종주국, 영국의 위기

완벽한 국가는 없지만 부러운 국가는 있다. 한 때 지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고 지금도 미국과 더불어 국제사회를 이끌어 가는 영국이다. 2012년 기준 국민총생산(GNP) 규모는 세계 6위로 국민 1인당 GNP는 4만 달러에 육박한다. 일찍이 1952년에 원폭실험에 성공했고, 원자력 잠수함과 항공모함을 가진 세계 5대 군사 강대국이다. 교육과 문화 등에서도 영국의 입지는 놀랍다. 명문대학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는 물론 런던정경대학 등이 있고 BBC방송, 로이터통신(Reuters)과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 등 글로벌 언론을 보유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찰스 디킨스, 토마스 무어, 버지니아 울프, 윌리엄 워즈워드와 조지 바이런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문인이 즐비하다. 1215년 마그나 카르타(대헌장)가 선포된 이래 꾸준히 구축해 온 민주주의 전통은 말할 것도 없다.



Absolute power decays absolutely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등장 : 머독 제국의 탄생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Absolute power decays absolutely).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선생과 학생 간에도, 사장과 종업원 간에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이유다. 행정부, 입법부와 사법부를 분리하고 권력 엘리트의 유착을 막기 위해 언론이라는 제4부를 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제4부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언론은 정작 그 누구로부터도 견제 받지 않는다. 선출직 공무원이나 정치인과 달리 언론은 국민의 평가를 받지 않는다. 시청률과 구독률과 같은 시장을 통한 자연스런 규율도 독과점을 형성한 언론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도로, 통신망과 보건시설을 외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언론에 대한 외부적 견제 역시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보장을 위해 권장할 수 없다.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법률, 교육 분야에 부과되는 전문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분야지만 공인된 자격증이나 자율적 윤리규정도 없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획득한 정보는 그 자체로 소득원이면서 권력의 원천으로 활용되지만 이에 대한 통제는 전적으로 언론계 내부의 양심과 자율에 맡겨야 한다. 저널리즘이 아닌 뉴스비즈니스에 눈을 뜬 루퍼트 머독이 악용했던 치명적인 약점이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뉴스코퍼레이션(News Corporation)은 1923년 호주에서 설립된 뉴스리미티드의 지주회사로 출발했다. 2012년 현재 연간 매출액은 330억 달러로 48,000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다. 북미, 유럽, 아시아, 남아메리카 등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으며 영화, 방송, 잡지, 신문, 인터넷, 위성방송, IPTV 등 미디어 전 분야를 아우른다. 대표적인 자회사로는 '20세기폭스(20th Fox), 폭스 뉴스(Fox News),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스카이TV(Sky TV), 더선(The Sun)' 등이 있다. 1985년 머독은 미국 국적을 취득했으며, 1996년 출범한 24시간 뉴스채널 폭스뉴스와 1995년부터 발간된 위클리스턴다드(Weekly Standard)를 통해 그의 영향력은 확대되기 시작했다. CNN의 경쟁자로 출발했던 폭스뉴스는 2001년 9·11테러와 2003년 이라크 전쟁 등을 거치면서 급성장했고, 현재 미국에서만 1억 가구 이상이 시청한다. 위클리스턴다드 역시 부시 행정부 이후의 보수주의 정책을 대변하는 잡지로 성장했으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머독의 영향력이 확대된 또 다른 배경으로는 월스트리트저널 인수와 폭스비즈니스뉴스(Fox Business News)의 출범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 최고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월스트리트저널은 2007년 머독의 뉴스코퍼레이션에 인수되었으며, 당시 인수에 반대했던 폴 스티그 편집국장은 그 이후 비영리언론사 프로퍼브리카(Pro Publica)를 창간했다.

해킹게이트의 진원지였던 뉴스오브더월드(News of the World)는 뉴스코퍼레이션의 영국 계열사인 뉴스인터내셔널에 속해 있다. 영국 타블로이드판 신문 시장



루퍼트 머독(왼쪽)과 레베카 브룩스(오른쪽)

의 선두 주자인 더선, 일간지 더타임스(The Times)와 일요일 선데이타임스(Sunday Times)도 이 회사의 자회사들이다. 그 밖에, 머독은 위성방송업체인 BskyB의 지분 39%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신문을 이용해 오브콤(Ofcom; Office of Communication, 방송통신규제기관)의 정책 결정에 개입해 왔다. 영국의 타블로이드판 신문은 섹스, 스포츠와 유명인 스캔들을 다루는 대중지로, 더선과 뉴스오브더월드의 발행부수는 각각 340만 부와 260만 부로 알려진다. 뉴스오브더월드의 한 회사에서만 1년에 약 10억 달러 이상의 순이익이 남는다. 대규모 발행부수를 토대로 이들 타블로이드 신문은 보수당과 노동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영국 정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누린다. 실제 1997년 임기를 마친 존 메이저 총리를 비롯해, 토니 블레어(1997년~2007년), 고든 브라운(2008년~2010년)과 데이비드 카메론(2010년~현재) 총리는 모두 머독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머독에게 정치적 영향력과 막대한 수익을 안겨 주었던 뉴스오브더월드가 불법도청의 진원지가 되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악마의 유혹 : 레베카 브룩스의 위험한 도박

축록자 불견산(逐鹿者 不見山). 확금자 불견인(攫金者 不見人). 사슴을 쫓는 자는 산이 험하고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황금에 눈이 먼 자는 주변을 돌아볼 줄 모른다는 말이다. 영국 최연소 전국지 편집국장장과 최초의 여성 편집국장 레베카 브룩스에 너무 잘 맞는 얘기다. 브룩스의 첫 출발은 별로 유쾌하지 못했다. 처음 입사했던 대중지 '더포스트(The Post)'는 발간 5주 만에 폐간되고 말았다. 1989년 브룩스는 뉴스



오브더월드의 비서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일요판 잡지의 인물기사 지면을 담당했던 그녀는 1994년 다이애나비의 연인으로 알려진 제임스 휴이트를 단독으로 인터뷰했다. 물론 특별실을 예약하고 방 구석구석에 도청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특종을 이끌어낸 당시의 경험이 얼마나 브루스의 고속 승진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불과 4년 후 그녀는 자매지면서 영국 최대의 타블로이드 신문이었던 '더선'의 편집부국장으로 승진했고 2년 뒤 2000년에는 뉴스오브더월드의 편집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00년 6월, 당시 여덟 살이었던 사라 페인이 할아버지 농장에서 행방불명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인근에 살고 있던 아동성폭행 전과범 로이 휘팅이 범인으로 밝혀졌고, 성폭행 전과자에 대한 특별 관리 문제로 여론은 들끓었다. 브루스는 여기에 주목했고 성폭행 전과자를 대상으로 한 '낙인찍기와 창피주기(Naming & Shaming)' 캠페인을 주도했다. 희생자 사라양의 부모님과 함께 아동 성폭행 전과가 있는 사람이 이사를 올 경우 이웃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사라법(Sarah's Law)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뉴스오브더월드의 발행부수는 치솟았고 경쟁지였던 데일리미러(Daily Mirror)와 데일리메일(Daily Mail)의 매출은 급감했다. 뉴스오브더월드에서 일하는 익명의 기자가 불법도청 의혹을 제기했지만 영국 경찰청은 무관심했다. 그녀의 부하 직원이었던 앤디 콜슨 편집부국장이 사설탐정 조나단 리에게 불법도청의 대가로 사례비를 지불해 왔다는 2002년 9월의 가디언(Guardian)의 의혹제기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편집국장으로서 탁월한 경영 성과를 보여준 브루스에 대한 머독의 신뢰는 더욱 확고해졌다.

2003년 더선의 편집국장으로 승진한 브루스는 한때 해비급 복싱 챔피언이었던 프랭크 브루노의 정신질환과 관련한 기사를 헤드라인으로 내보냈다. 정신질환 자선단체 세인(Sane)의 자료를 토대로 한 일련의 유명한 관련 정신질환 기사가 연속으로 실렸다. 브루스의 뒤를 이어 뉴스오브더월드의 편집국장으로 승진한 콜슨과 브루스는 잇따른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해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야 했다. '문화, 미디어와 스포츠' 상임위원회 질의에서 브루스는 "과거 한때 정보비 명목으로 금전적 거래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고, 콜슨은 "모든 사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답했다. 당시 청문회에서 이들을 강력하게 비판했던 크리스 브라이언트 의원은 그 이후 '더선'의 악의적 보도에 시달려야 했다.

2006년 6월 28일 머독은 보수당 지도자였던 데이비드 카메론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고든 브라운이 이끌었던 노동당은 2010년 5월 보수당에 정권을 넘겨주었고 카메론은 총리로 선출되었다. 머독이 퇴임을 앞둔 토니 블레어 총리에게 뉴스코퍼레이션의 2인자 자리를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은 그해 여름이었다. 머독의 미디어 제국은 그러나 2006년 8월 왕실에 대한 불법도청 수사를 계기로 또 다른

위기를 맞았다. 뉴스오브더월드의 왕실 담당 기자였던 클리브 굿맨과 사설탐정 글렌 몰케어는 2007년 1월 각각 징역 4개월과 6개월을 구형받았다. 당시 이들의 상관으로 있던 콜슨은 사임했고, 곧이어 카메론 보수당 리더의 홍보책임자로 자리를 옮겼다. 머독이 소유하고 있는 신문사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했던 카메론에게 있어 그는 최고의 적임자였다. 2008년 여름 머독은 자가용 비행기를 보내 카메론을 자신의 휴양지로 초대함으로써 향후에 있을 정치적 연대를 확인해 주었다.

진실 투쟁: 공모자들과 새로운 고발자들

2007년 1월 잠깐 열렸던 판도라의 상자는 다시 땅 속 깊이 묻혔다. 왕실이 특별히 요청한 사건 외에 런던 경찰청은 다른 어떤 불법도청 사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해킹게이트에 관한 기사는 그러나 언론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었다. 2009년 7월 가디언은 추가적인 불법도청 사례를 폭로했고 뉴스코퍼레이션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2009년 9월 프라이빗아이(Private Eye) 역시 불법도청이 뉴스인터내셔널 산하 신문사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루퍼트 머독은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폴 스티븐슨 경찰청장은 마침내 2009년 8월 치안감 존 에이츠를 단장으로 하는 재조사 팀을 꾸렸지만 8시간의 단독 조사를 끝으로 추가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곧 이어 열린 의회 청문회를 통해 에이츠는 “해당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을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답변했고, 뉴스인터내셔널의 법무팀장 톰 크론 역시 동일한 답변을 제시했다. 경찰청의 재조사가 예정되어 있던 2009년 9월부터 1년 동안 앤디 콜슨의 뒤를 이어 뉴스오브더월드의 편집국장이 된 네일 윌리슨으로부터 폴 청장이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은 당시 드러나지 않았다. 의회 청문회의 길도는 조사와 경찰청의 은폐노력으로 묻힐 줄 알았던 진실은 2010년에 접어들면서 더욱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2010년 2월 가디언은 전직 뉴스오브더월드 편집국장이면서 당시 카메론 보수당 지도자의 홍보책임자로 일하고 있던 앤디 콜슨을 상대로 조나단 리를 고용한 이유를 공개적으로 질문했다. 뒤이어 4월 더옵저버(The Observer) 또한 루퍼트 머독이 고든 브라운 수상에게 불법도청 관련 청문회를 거부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2010년 5월 총리에 당선된 카메론은 콜슨을 국정 홍보책임자로 임명했으며 그의 연봉은 14만 파운드로 별정직 공무원 중 최고였다. 이미 2009년 뉴스인터내셔널의 대표이사로 승진한 브룩스와 카메론 정부의 실력자로 부상한 콜슨의 앞날은 그러나 별로 밝지 못했다. 2010년 9월 1일,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는 콜슨 밑에서 불법도청에 가담했던 내부 고발자 선 호어의 인터뷰를 게재했고, 뒤이어 2011년 1월 26일 런던 경찰청은 해킹게이트를 전면 재조사하는 ‘작전명 위팅(Operation Weeting)’에 착수했다. 불법도청 피해자 중에서 일부 유명 인사를 대상으로 뉴스오브더월드가 보





2011년 7월 10일 폐간된 뉴스오브더월드

상금을 지불하고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결국 열릴 것 같지 않았던 해킹게이트는 마침내 2011년 여름 밀리 다우어 사건을 계기로 전면에 드러났다.

2002년 3월 당시 13세였던 다우어는 귀가 도중 납치된 다음 살해된 채로 발견되었다. 런던 경찰청은 2011년 6월 23일 범인으로 레비 벨필드를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다우어의 음성사서함이 뉴스오브더월드 기자에 의해 불법 도청된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가디언은 이를 7월 4일 공개했다. 7월 8일 경찰은 2007년 구속되었던 왕실 전문기자 굿맨을 다시 체포했고, 분노한 대중은 뉴스오브더월드에 대한 광고불매 운동에 나섰다. 뉴스오브더월드에 광고를 싣는 광고 책임자의 이메일이 구글에 공개되면서 네티즌의 항의가 줄을 이었다. 불법도청의 피해자를 중심으로 세워진 ‘해킹오프(Hacked off)’는 블로그를 통해 광고정책을 바꾸지 않는 기업의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포드자동차, 르노자동차, 코카콜라, 바디샴, 미쯔비시, 할리팩스 등 20개 이상의 광고주가 즉각 광고를 철회했고, T모바일, 오렌지, 프락터 & 갬블, 퍼스트 초이스 등이 광고정책을 재고하겠다고 발표했다. 광고주 압박은 곧이어 머독의 다른 신문사로 이어졌고, 머독은 급기야 7월 10일 168년 전통의 뉴스오브더월드 폐간을 선언했다.

불법도청, 이메일과 컴퓨터 해킹 등은 브룩스가 편집국장으로 재임했던 2000년 10월 3일부터 2006년 8월 9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브룩스는 이 기간 동안 뉴스오브더월드의 편집국장(2000년~2003년)과 더선의 편집국장(2003년~2009년)으로 일했고, 콜슨은 그녀를 대신해 뉴스오브더월드의 편집국장으로 일했다. 당시 이들 신문사의 모기업이었던 뉴스인터내셔널 대표이사는 네슬리 힌튼이었고 톰 크론은 법무 책임자였다. 이들은 모두 체포되었으며 불법도청과 법집행 방해 등의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머독은 물론 브룩스와도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카메론 총리



는 7월 13일 레버슨경(Lord Leveson)을 특별검사로 하는 공개청문회를 지시했다. 언론계 전반에 걸친 불법취재 관행은 물론 언론의 자율규제, 언론과 정치 및 언론과 경찰에 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이 청문회의 목적이었다. 완강하게 버티던 브룩스 역시 7월 15일 사임을 발표했는데, 그녀에 대한 체포영장은 사흘 후 발부되었다. 7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뉴스인터내셔널 소속 신문에는 루퍼트 머독이 친필로 사인한 아래와 같은 전면 광고가 실렸다.

뉴스오브더월드에는 다른 사람들이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사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자신에게 그것을 적용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저희는 불법전화 도청과 관련한 불미스런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합니다. 이번 일로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관련 사건을 좀 더 빨리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후회를 합니다. 사과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자유롭고 투명한 언론은 사회의 건강한 동력이라는 신념 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신념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더 구체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며 피해자분들이 겪은 상처를 치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말씀에도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We are sorry.

The News of the World was in the business of holding others to account. It failed when it came to itself.

We are sorry for the serious wrongdoing that occurred.

We are deeply sorry for the hurt suffered by the individuals affected.

We regret not acting faster to sort things out.

I realise that simply apologising is not enough.

Our business was founded on the idea that a free and open press should be a positive force in society. We need to live up to this.

In the coming days, as we take further concrete steps to resolve these issues and make amends for the damage they have caused, you will hear more from us.

Sincerely,

Rupert Murdoch

Rupert Murdoch

제국의 황혼 : 레버슨 보고서와 경찰의 후속 조치

루퍼트 머독과 아들 제임스 머독은 몇 차례에 걸친 의회의 출석 요청을 거부했다. 분노한 의회는 영장을 발부했고 2011년 7월 23일 마침내 청문회가 열렸다. 불법도청과 관련한 사항을 알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머독은 “뉴스코퍼레이션에서 뉴스인터내셔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1%에도 못 미친다”고 말했다. “자신의 어리석은 부하 직원들이 한마디도 언급해 주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 세계 언론은 머독의 말을 믿는 것처럼 보였고, 그의 젊은 아내 웬디 덩이 청문회에서 몸을 날려 오물투척을 막았다는 영웅담에만 열중했다. 뉴스오브더월드와 더선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는 사실과 뉴스코퍼레이션 소속 자회사 전체에 그의 편집방침이 전달된다는 것은 드러나지 않았다. 2010년 뉴욕타임스, BBC와 프로퍼브리카 등에서 해킹게이트를 문제 삼았을 때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을 통해 이를 강력 비난했다는 사실도 언급되지 않았다.

해킹게이트가 열린 이후 영국 사회의 대응은 크게 레버슨 청문회와 불법도청과 관련한 부패경찰 수사를 포함한 후속 조사 등 두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청문회가 실시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6,000건 이상의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었고 더선의 불법 뇌물 중여 문제도 드러났다. 2012년 11월 29일 레버슨 청문회는 2,0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언론사 자율로 설립해 운영해 왔던 언론고충처



청문회 당시의 루퍼트 머독(앞줄 오른쪽)과 그 부인 웬디 덩(가운데), 머독의 아들 제임스 머독(앞줄 왼쪽)



루퍼트 머독의 부인 웬디 덩이 청문회에 난입하여 루퍼트 머독에게 달려드는 남성에게 펀치를 날리는 장면

리위원회(PCC; Press Complaints Commission)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문제, 정보보호법의 개정, 프라이버시 보호를 담당할 특별정보청장(Information Commissioner) 신설, 언론과 정치인 및 언론과 경찰의 관계에 대한 견제 및 감시 방안 등이 담겨 있다.

2012년 3월 가석방되었던 브룩스는 다시 구속되었으며 그녀의 남편, 운전기사, 경호원과 비서도 함께 체포되었다. 의회 '문화, 미디어 및 스포츠' 상임위에서도 5월 1일 "루퍼트 머독은 불법도청을 의도적으로 간파했고, 국제적 기업을 운영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2009년 재조사를 덮었던 스티븐슨 총장은 공모 혐의로 구속되었고 예이츠 치안감은 불명예 퇴직했다. '작전명 위팅'은 그 이후 언론사 등으로부터 불법으로 뇌물을 받은 비리 경찰을 조사하기 위한 '작전명 엘베덴(Operation Elveden)'과 뉴스오브더월드에 의한 불법 컴퓨터 해킹을 조사하기 위한 '작전명 툴레타(Operation Tuleta)' 등으로 확대되었다. 루퍼트 머독 부자 역시 2013년 가을에 열릴 정식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영국 사회는 현재 레버슨 보고서를 전면적으로 곧바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입장과 언론과 관련한 규제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서로 맞서고 있다. 하지만 언론 독과점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또 언론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 장치가 작동했다면 해킹게이트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2013년 3월 18일, 결국 영국 정치권이 왕실칙령에 근거한 언론 규제기관 신설에 합의했다. 이 규제기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오보에 있어서는 사과문 게재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왕실칙령의 개정을 위해선 의회 의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여 개정을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했다. 해킹게이트로 인한 따가운 여론의 질타 속에서 머독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와 집권 보수당도 더 이상 언론사와 머독을 감싸줄 수는 없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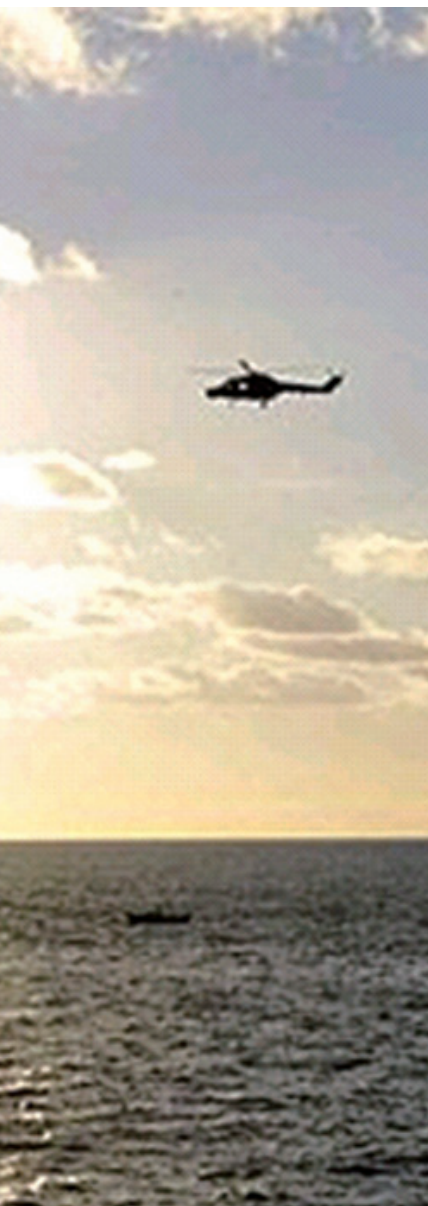
아덴만 영웅들의 인질 구출 작전

한국은 청해부대의 최영함에 인질 구출을 지시했다. 순식간에 온 국민의 관심이 인도양으로 쏠렸다. 실패에 대한 걱정과 성공을 바라는 염원이 이어졌다.





글. 이정훈
신동아 편집위원



호랑이(寅) 해는 확실히 드센 것 같다. 경인년(庚寅年)인 1950년 우리는 6·25전쟁을 겪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경인년인 2010년, 천안함 피침 사건(3월 26일)과 연평도 포격전(11월 23일)을 겪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DMZ)에서는 경찰 병력이 기관총 이하의 소화기만 갖고 순찰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민정경찰(民政警察)’을 투입한다. 사단의 최정에 부대인 수색대 중 일부에 민정경찰 자격을 부여해 GP(Guard Post; 전방초소)에 투입하는 것이다. 민정경찰은 포는 소지하지 않는다.

북한군도 마찬가지다. 북한 사단은 최정에 부대를, 민정경찰 부대를 줄인 ‘민경대(民警隊)’로 명명해 놓았다. 민경대 역시 기관총 이하의 무기만 소지하고 GP에 들어간다. 그래서 DMZ 총격전은 기관총 사격만 오가는 것이다. K-2나 AK-47 같은 소총도 쏠 수 있지만, 정확도와 사거리가 기관총만 못하기에 DMZ 교전은 대개 기관총으로만 이루어진다.

DMZ의 남북 경계인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 바깥에 있는 부대는 정규 무장을 할 수 있다. 야포와 전차, 장갑차, 헬기 등 모든 무기를 갖출 수 있다. 그러나 그 무기를 DMZ 안쪽으로 쏠 수는 없다. DMZ를 넘겨 상대 지역에 포탄이나 미사일을 떨어뜨려도 안 된다. 정전협정이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3차 핵실험 후 북한이 거듭해서 정전체제를 깨겠다고 하는 것은 DMZ 안에 있는 우리 GP, 남방한계선 남쪽에 있는 우리 GOP(General Out Post; 일반전방초소) 부대를 향해 포탄과 미사일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위협이다. 정전상태 이전의 전쟁을 하거나 전쟁을 해도 되는 상태로 되돌아가겠다는 위협인 것이다.

한반도의 충돌은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해서도 금지되고 있다. 남북한은 이 합의서를 채택한 이듬해(1992년) 세 개의 부속합의서에 서명하는데, 그 중 하나가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약칭 불가침합의서)’이다. 불가침(不可侵)은 상대를 침략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1965년 한국과 일본은 ‘기본조약’을 발표시켜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국가와 국가가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려면 상대를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침략하지 않는다는 약속부터 해야 한다. 그래서 기본조약에는 반드시 상대를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침략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간다. 기본조약은 평화로운 관계로 들어간다는 약속인지라, ‘평화조약’ 또는 ‘강화(講和)조약’으로 부르기도 한다.



남북한은 상대를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끼리 맺는 조약을 맺지 못한다. 그래서 조약이 아닌 ‘합의’를 한다. 남북한은 1992년 불가침합의서를 맺었으니 침략하면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일으켰고, 3차 핵실험 후에는 이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정말 한심한 것은 이 땅의 중북세력이다. 상대를 독립국가로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남북한은, 맺을 수 있는 최대한의 평화 합의인 불가침합의서에 서명했는데, 저들은 남북한이 평화조약을 맺어야 한다고 선동한다. 불가침합의서를 깨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북한인데 대한민국을 향해 남북평화조약을 맺으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갑작스럽게 정전협정과 불가침합의를 거론한 것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거론하기 위해서이다. 두 사건을 거론하는 것은 아덴만 여명작전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이 NLL을 넘어와서 발사한 CHT-02D 어뢰로 대한민국 초계함인 천안함을 격침시킨 사건이다.

연어급 잠수정이 어뢰를 쏘아 천안함을 격침시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증거로 확인됐다. 첫째가 현장에서 수거한 CHT-02D 어뢰의 잔해이다. 둘째가 사건 전후 미국 첩보위성과 우리의 금강 정찰기 등이 찍어온 사진이다. 우리 군은 사건 전날 연어급 잠수정이 사라진 것을 알았다. 그런데 해석을 잘못했다. 연어급 잠수정은 문어급, P-4급 등과 함께 작은 잠수정이다. 때문에 이 잠수정들을 공작

원 침투로만 사용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다. 그때 서해의 북한 군항에서는 연어급 잠수정이 처음 등장했는데, 우리 군은 이 잠수정이 건조가 될 때 시험운전을 하고 있다는 판단을 했다.

따라서 이 잠수정이 사라져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작전하는 해군 함정에 대잠(對潛)작전을 하라는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천안함 사건을 당한 후 우리는 미 첩보위성이 찍어놓은 사진을 받아와 다시 살펴보다가, 이 연어급 잠수정이 두 개의 어뢰관 가운데 한 개를 비운 상태로 기지로 돌아온 것을 보고 경악했다. 북한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연어급 잠수정에 실은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것을 뒤늦게 안 것이다.

어뢰는 미사일 정도에 해당하는 전략무기로 인식된다. 그러나 사용 빈도는 훨씬 더 적다. 미사일은 이라크전(2003년)이나 아프간전(2001년)에서 널리 사용됐지만, 어뢰는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맞붙은 포클랜드 전쟁(1984년)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어뢰를 탑재한 잠수함정도 손꼽히는 공격무기다. 따라서 천안함 사건은 ‘기관총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다. 상대 진영으로는 공격하지 않는다’는 정전협정 체제를 완전히 무시한 도발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응징정보복을 해도 ‘한국이 정전 체제를 깨고 북한을 침략했다’는 비난을 국제사회로부터 받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응징정보복을 하지 못했다. 연평도 포격전은 천안함 사건보다 더한 도발이었다. 이 사건은 인민군 4군단 포병여단이 방사포와 기타 포를 동원해 연평도에 TOT 사격을 한 경우였다.

TOT(Time on Target)는 표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포는 먼저 발사하고 가까이 있는 포는 나중에 발사해, 표적에는 동시에 포탄이 떨어지게 하는, 포병 사격의 꽃으로 불리는 일제사격(一齊射擊)술이다. 이러한 사격을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후 한국을 향해 처음 떠났다. 정전 후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전쟁 난민이 발생했다.

북한이 정전협정과 불가침합의를 거듭해서 어기고 있는데, 종북세력들은 남북 평화조약을 맺어야 한다는 이상한 소리만 질러댄다. 북한이 3차 핵 실험을 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은 종북주의자들의 자유발언을 보장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설이 길었다. 긴 사설을 늘어놓은 것엔 이유가 있다. 아덴만 여명작전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당한 2010년 대한민국은 부글부글 끓었다. ‘북한을 응징해야 한다’는 보수파의 주장과 ‘평화조약을 맺어야 한다’는 종북세력의 목소리가 뒤엉켜 내홍에 내홍을 거듭했다. 그러나 보수세력과 종북세력 사이에는 큰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보수세력도 종북세력 만큼이나 한반도가 전쟁으로 들어가는 것은 회피한다는 사실이었다. 마음 같아서는 주석궁과 국방위원회-인민무력부 청사, 4군단 본부 등을 강력히 폭격하고 싶었지만 북한이 공군기와 노동과 스커드 미사일, 방사포 등으로 총반격을 해온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불바다가 될 것이라는 공포를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싸우자”, “싸우지 말자”는 우리끼리의 내홍만 거듭했다.

삼호주얼리호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

그러한 때 신경을 긁는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다. 2011년 1월 15일 대한민국 상선 ‘삼호주얼리호’가 아덴만 입구의 인도양에서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것이다. 승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뛰다고, 소말리아 해적까지도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으로 여겨졌다. 자존심이 상한 대한민국은 폭발 일보 직전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납치 사건도 쉽게 다룰 수가 없다. 잘못하면 인질이 희생된다는 부담이 있

기 때문이다.

1979년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일어난 이슬람 복고혁명으로 성난 시위대가 미국 대사관을 점령했으며 대사관 직원들과 미국인 52명을 1981년 1월까지 444일 동안 인질로 삼는 사건이 있었다. 1980년 4월 24일, 미군은 이들을 구출하고자 ‘독수리 발톱’ 작전을 펼쳤다. 그런데 동원한 수송기와 헬기가 충돌해 특공대원들 8명이 전사하는 바람에 작전은 대실패로 돌아갔다. 미국의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졌다. 지난 2월 제8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세 개의 오스카 상을 수상한 미국 영화 ‘아르고(Argo)’가 바로 이 사건을 소재로 한 것이었다.

미국은 소말리아에서도 나쁜 추억을 이어갔다. 소말리아는 오랫동안 내전을 겪어 왔기에 1992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군대가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들어갔다. 소말리아의 민병대는 평화유지군을 적대시하고 공격했다. 1993년 소총으로 무장한 소말리아의 민병대가 미군의 UH-60 블랙호크 헬기 두 대를 격추시키고, 전사한 미군의 시체를 온 시내에 끌고 다녔다. 그 장면을 본 미국인들은 경악했다.



그 후 미군은 소말리아에서 철수했다. 2002년에 나온 미국 영화 ‘블랙호크다운(Black Hawk Down)’은 이 사건을 소재로 제작한 것이었다. 이 사건은 너무도 유명해서 특수부대원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특수부대원들이라면 누구도 같은 경우를 겪고 싶지 않다는 강박증까지 갖게 되었다. 그런 소말리아의 해적이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당한 대한민국의 상선을 납치한 것이다.

당시 한국은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해 한 척의 일반 구축함(DDH)으로 구성된 청해부대를 파견해 놓고 있었다. 최영함으로 명명된 이 구축함에는 해적 소탕전을 펼칠 수 있도록 UDT/SEAL로 약칭되는 해군 특수전 여단의 한 개 검문검색대와 링스헬기 한 대가 탑재되어 있었다. 한국은 청해부대의 최영함에 인질 구출을 지시했다. 순식간에 온 국민의 관심이 인도양으로 쏠렸다. 실패에 대한 걱정과 성공을 바라는 염원이 이어졌다.

전속력으로 피랍 해역으로 가면서 최영함은 삼호주얼리호에는 석해군 선장(이하 ‘석 선장’)을 비롯한 한국인 선원 8명과 미얀마 선원 11명, 인도네시아 선원 2명 등 21명이 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작전을 하려면 선박의 구조를 알아야 했다. 최영함은 삼호주얼리호 본사로부터 그 배의 설계도를 받아 어디에 인질이 잡혀 있고, 어디에 납치범들이 있을지를 추정했다. 특수전요원들은 어디로 침투할 것인지에 대한 작전도 짰다.

1차 구출작전 실패

1월 18일 저녁 8시쯤 전속력으로 달려온 최영함은 삼호주얼리호를 발견했다. 그때 해적들은 또 다른 납치를 시도하고 있었다. 삼호주얼리호에서 내린 자선(子船)을 이용해 몽골 선박을 또 납치하려고 한 것이다. 최영함의 함장인 조영주 대령(이하 ‘조 함장’)은 대담한 작전을 펼쳤다. 링스헬기를 띄워 자선에 탄 해적들을 공격하는 사이, 고속단정

으로 삼호주얼리호에 특수전 요원들을 침투시키려 한 것이다.

그러나 너무 단순한 작전이었기에 삼호주얼리호에 있던 해적들이 고속단정을 발견하고 사격을 가해왔다. 고속단정은 고무보트보다 약간 큰 배이기에 방호(防護)력이 없다. 조 함장은 고속단정을 철수시켰다. 그 사이 링스헬기의 사격에 놀라 해적들이 바다로 뛰어들었기에 자선은 빈 배가 되었다. 고속단정을 불러들인 최영함은 자선을 노획했다. 이 작전은 실패로 이해됐다. 해적들의 사격으로 고속단정을 탔던 특수전 요원들이 상처를 입었다고 하자 국민들의 마음은 어두워졌다.

그때 삼호주얼리호의 석 선장도 이심전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피랍 직후 그는 구출 부대가 쫓아올 수 있도록 소말리아로 빨리 가자는 해적들을 속이며 배를 지그재그로 몰았다. 그리고 엔진 오일에 물을 타서 연료가 완전히 연소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고장을 내 배의 속도도 줄였다. 해적들이 뒤늦게 눈치를 채고 석 선장을 구타해 다리 골절상을 입혔다.

한국은 당하기만 하는 나라인가. ‘이순신 장군이 통곡을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삼호주얼리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악화된 국민 여론 때문에 서울에서는 계속 작전을 성공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조 함장은 속이 타들어갔을 것이다. 그는 결단을 내렸다. 아덴만 여명작전을 개시한 것이다.

아덴만 여명작전 개시

1월 21일 새벽 그는 서울과 연결된 통신망을 차단했다. 무선을 차단하는 순간 함합 등 서울의 본부에서는 난리가 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작전을 위해 과감히 결정했다. 그리고 검문검색대장을 통해 저격수인 박모 중사를 최영함에서 가장 높은 마스트(선체의 갑판 위에 세워진 기둥)로 올라

가 몸을 숨게 했다. 동이 뜨지 않은 시각 박 중사는 저격수용 망원경과 조준경이 달린 저격수용 총을 들고 마스트로 올라가 몸을 숨겼다. 항공모함 같은 큰 배도 바다에서는 흔들린다. 마스트는 최영함에 서 가장 높은 곳이니 더 많이 흔들린다. 박 중사는 흔들리는 배의 리듬을 잡아 ‘원 샷 원 킬(one shot, one kill)’을 해야 한다.

최영함은 전투함이라 함포와 미사일로 무장해 있다. 그러나 인질 구출작전에 이러한 무기는 무용지물이다. 최영함 갑판에는 M-60 기관총을 쏠 수 있는 거치대가 있다. 조 함장은 신모 중사에게 그 거치대에 M-60 기관총을 걸어 놓고 사격을 준비하도록 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공격조인 검문검색대 요원을 태운 고속단정을 내려 삼호주얼리호 후미로 다가가게 했다.

조 함장은 후대가 간편해 게릴라들이 많이 사용하는 RPG-7 로켓포를 해적들이 갖고 있을 것으로 보았다. 고속단정이 RPG-7을 제대로 맞으면 박 살나므로 해적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유인해야 했다. 고속단정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다음 그는 링스헬기를 이함시켰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모든 배에는 그 누구와도 통신할 수 있는 ‘국제 상선통신망’이 있다. 그는 이 통신망을 통해 한국 말로 “삼호주얼리호 선원 여러분, 잠시 후 우리 해군이 여러분의 구조를 위해 공격할 것입니다. 가능한 한 안전 구역으로 대피하고, 외부로 나오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반복했다. 해적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선원은 물론이고 한국 선원과 함께 살아온 인도네시아 등 3국 선원들은 알아챌 것으로 기대했다.

모든 것은 운에 맡겨야 한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결심이다. 충분한 방송을 했다고 생각한 그는 링스헬기에 공격을 지시했다. 링스헬기는 해적이 그들 본부와 교신하지 못하도록 삼호주얼리호의 통신 안테나부터 부렸다. 통신을 못하게 하면서

작전을 펴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갑판에 있던 해적 한 명을 쓰러뜨렸다.

그때 쯤 최영함 갑판에 있던 신 중사가 M-60으로 배를 조종하는 시설이 집중돼 있는 선교(船橋)를 향해 집중사격을 퍼부었다. 집중사격을 받은 선교에서 일부 해적들이 탈출하자 마스트에 있던 저격병(스나이퍼, sniper) 박 중사가 정확한 단발 사격으로 쓰러뜨렸다. 서서히 동이 터오고 있었다. 계속된 사격으로 삼호주얼리호에서는 움직이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 김모 대위가 이끄는 공격조가 삼호주얼리호 후미에 고속단정을 붙이고 갑판으로 올라왔다. 배의 구조를 파악하고 있던 그들은 순식간에 선교

교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삼호주얼리호(합동참모본부 제공)



쪽으로 달려가 각자가 맡은 선실을 향해 흠어져 섬광탄을 던져 넣었다. 섬광탄이 터지면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눈과 귀가 멀게 된다. 공격조는 순식간에 배를 장악했다. 그때 석 선장은 내부 상황을 공격조에 알려주다 해적으로부터 총격을 받고 쓰러졌다.

완벽한 작전성공(Perfect operation)

해적으로부터 총격을 받은 석 선장의 부상은 심각했다. 해적은 8명이 사살되고, 5명은 생포되었다. 석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과 공격대원들은 대부분 무사했고, 일부 경미한 부상자들이 있었을 뿐이었다. 완벽한 작전성공(Perfect operation)이었다. 조 함장은 납치된 선박에서 인질과 공격대원 중 한 사람도 숨진 이가 없이 구출하는 신기록을 세운 것이다.

보고를 받은 조 함장은 비로소 서울과 연결된 무선망을 개방해, 완전 성공을 보고했다. 그러자 “잘했다”는 칭찬과 함께 “야! 왜 무전을 켜어”라는 비난이 동시에 날아들었다. 그러나 어쩔 것인가. 작전에 집중하려면 무선을 꺼야 했고 그 결과 성공을 거뒀는데.

조 함장이 무선을 차단하고 작전에 집중한 것은 연평도 포격전을 보면 아주 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천안함 사건 후 우리는 제대로 사건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난리를 쳤다. 이 난리는 ‘보고만 제대로 하면 상급부대에서 제대로 지휘하고 지원해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의미가 있다. 그런데 연평도 사건 때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났다. 연평도 사건은 함참을 비롯한 우리 군 수뇌부가 충분히 주목한 가운데 일어났다. 때문에 100% 보고가 이뤄졌지만, 함참의장을 비롯한 한국군 수뇌부는 어떠한 지지도, 어떠한 지원도 해주지 않았다.

공격을 받은 연평부대장이 악을 써가며 “몇 발을 쏘까요?”라고 물어도, “대응은 현장 지휘관에 일임돼 있다”는 이유로 침묵만 돌아왔다. 그렇다면 작

전만 방해하는 보고를 왜 해야 하는가?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부대라면 보고를 차단하고 작전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 조 함장이 그렇게 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는 승리를 갈망하는 국민 소망을 만족시켜 줬으니, 누구도 그의 행동을 비난할 수 없었다.

최영함의 작전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해적의 총격을 받은 석 선장이 위독했기에 빨리 병원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야 했다. 중동 국가의 의료 시설은 대부분 열악한 수준이다. 그런데 오만에 과거 총상을 입은 미군을 치료한 병원이 있다는 정보가 있어 최영함은 전속력으로 오만으로 달려갔다. 같은 소식이 한국에 알려지자 아주대학병원 외상센터의 이국종 박사가 팀을 이끌고 오만으로 날아갔다. 오만의 술탄카부스병원으로 옮겨진 석 선장은 1차로 일부 총알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26일 이국종 박사도 참여한 가운데 총알 제거 수술을 또 한 번 받았다.

세계는 한국이 생포해온 해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주목했다. 해적 처벌은 국제법적으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모든 나라의 군함은 그 나라의 영토로 인정된다. 때문에 세계 어디에 가 있는 군함에서는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된다. 다른 나라에 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의 법이 적용된다면, 더 이상 군함이 아니다. 그러나 민간 선박은 다른 나라에 가 있으면 속지(屬地)주의에 따라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한다. 한국은 최영함이 생포한 해적을 한국으로 데려가 처벌하겠다고 사법권 행사를 천명했다.

최영함은 주인이 없는 공해(公海)에서 해적들을 제압했다. 그때 발생한 해적 사망자 처리가 마땅치 않으면 수장(水葬)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말리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소말리아에 인도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의 움직이는 영토가 생포한 해적은 대한민국의 공군기로 압송해 와야 한다. 그러나 한국



2010년 12월 8일
부산작전기지를
출항할 당시의 최영
함(해군 제공)

공군이 보유한 최대 수송기인 C-130은 중간 급유 없이 오만에서 한국까지 한 번에 날아올 수 없다. 급유기가 없으니 몇 나라에 내려 연료를 보급 받아야 하는데, 모든 나라는 다른 나라 군용기의 이착륙을 까다롭게 통제한다.

그래서 민항기로 데려오는 것을 검토했는데, 그렇게 되면 속지주의에 따라 그 나라와 또 협의를 해야 한다. 한국이 방법을 찾지 못하자 오만에 인접한 아랍에미리트(UAE) 왕실이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왕실 전용기를 내주었다. 당시 UAE는 한국 원전을 도입하기로 했기에 한국과의 관계가 매우 좋아 그런 결정을 내려준 것이다. 3월 30일 이 비행기를 타고 해적들이 도착하자 언론은 큰 관심을 보였다. 군은 해적들을 해경에 인도했고, 해경은 1차 조사를 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 그리고 재판을 열어 무기징역에서 12년까지의 형을 최종 확정했다. 한국은 완벽히 사법권을 행사한 것이다.

해적들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날인 29일 의식을 되찾지 못한 석 선장도 이국종 박사와 함께 귀국했다. 아주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석 선장은 2월 3일 의식을 잠시 회복했지만 부상 정도가 심해 280일간 치료를 받고 11월 4일 퇴원했다.

군의 최대 가치는 승리에 있다

아덴만 여명작전은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크게 자존심이 상했던 한국인들을 만족시켜준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우리 군은 사기를 회복해 북한에 대해 다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 사건은 군의 최대 가치는 승리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당하기만 하면 양론이 대립해 혼란이 이어지지만, 승리를 하면 애국심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이 없었으면 한국은 계속된 남남갈등으로 혼란이 계속 됐을 것이다. 이 사건은 군의 궁극적인 가치는 승리에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경우다.

이 사건은 군함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우리 군이 개입된 사건은 우리가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과 해적 같은 국제범죄를 한국이 책임지고 제압해 처벌까지 했다는 귀중한 선례를 남겼다. 이렇게 아덴만 여명작전은 신화를 남기고 역사로 넘어갔다. 지난 해 말 조 함장은 준장에 진급하고 석 선장은 지난 2월 말의 18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승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가져다 준다. 3차 북핵실험으로 인한 위기도 승리를 하겠다는 강한 집념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것을 아덴만 여명작전은 보여준다.



CCTV에 찍힌 사랑의 태



정리. 김문중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연속교육팀

학교 체벌 보도와 초상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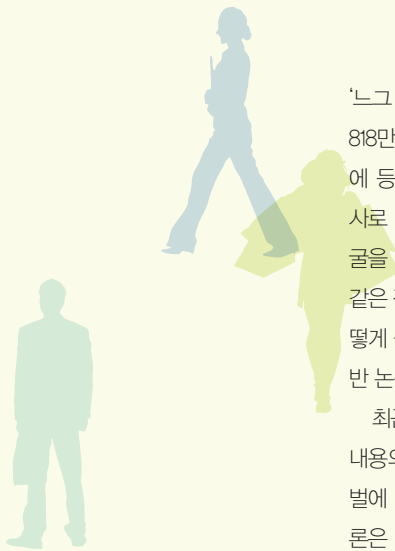
‘느그 아버지 뭐하시노?’

818만 관객 수를 기록한 영화 ‘친구’(2001년)에 등장하는 유명한 대사이다. 재미있는 대사로 패러디까지 된 이 장면에는 학생의 얼굴을 때리는 선생님의 모습이 나온다. 만일 같은 장면이 오늘날 학교에서 재현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찬반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최근 몇몇 교육청에서는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등 학교 체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또한 언론은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발맞추어 학교 체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하고 있다. 과연 이런 보도는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만 있을까? 가령 언

론이 학교 체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체벌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보도하는 경우, 화면에 등장하는 교사나 학생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케 하지는 않을까? 학교 체벌 보도의 문제는 교권과 학생의 인권, 정당한 훈육의 범위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실무 수습 중인 로스쿨생들을 대상으로 모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실제 조정사례를 각색하여 쟁점을 추출하고, 신청인측과 피신청인측으로 임의로 나뉜 로스쿨생들이 각 쟁점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의 주제는 ‘학교 체벌 보도의 문제점과 초상권 침해’였는데, 주





요 쟁점은 ① 사립 고등학교 교장대행을 공인으로 볼 수 있는지, ② CCTV에 촬영된 학생 체벌 장면에 대해 해당 교사가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③ 정정보도청구의 입증책임이 어느 당사자에게 있는지 등이었다. 이 글에서는 두 번째 쟁점에 대해 진행된 토론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사례에 소개된 보도 사진은 CCTV 촬영 장면이었기 때문에 신청인이 해당 보도에 대해서도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침해되는 초상권과 보도로써 달성되는 공익 중 어느 가치가 우월한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토론회에서는 풍성한 논의를 위해 ① 고등학교 교장대행인 신청인이 공인이 아니고, ② 해당 사진으로 신청인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였다. 다음은 해당 쟁점에 대한 주요 내용이다.

I 사건 개요

모 인터넷 신문(피신청인)은 부산의 한 사립 고등학교 교장대행(신청인)이 수업 중 휴대폰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한 학생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학생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당시 CCTV 화면을 게재하였다. 게재된 CCTV 화면은 복도에서 벌을 서던 학생의 머리를 신청인이 때리는 장면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단지 꿀밤을 몇 차례 쥐어박은 것에 불과하고 CCTV 화면이 실려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II 토론 내용

피신청인측 - 이민희(인하대 로스쿨)



먼저 신청인이 주장하는 초상권 침해는 면책요건으로서의 '동의'가 있었다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는 초상권이 '

거절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다수의 판례도 동의한 범위 내의 초상 촬영, 공표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신청인은 해당 학교의 교장 직무대행으로서 CCTV의 설치와 상시 촬영 중임을 인지하였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여 면책될 수 있는 보도에 해당할 것입니다.

신청인측 - 안지연(고려대 로스쿨)

피신청인측에서 CCTV가 학내에 설치되어 있고, 상시 촬영 중임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CCTV 촬영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만,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첫째, 학내 CCTV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행정적 목적에서 설치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CCTV의 설치만으로 개인의 초상권과 행동자유권 등의 기본권의 제한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동의로 볼 수는 없습니다. 둘째, CCTV에 의한 촬영을 일반 사진 촬영과 동일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CCTV는 흔히 감시 카메라로 사용이 되고, 일반 사진 촬영처럼 정면에서 포커스를 두어 드러나게 촬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CCTV는 거기에 촬영되는 사람들에 의해 설치동의가 된 것도 아닐뿐더러, 자신이 찍히는 것 즉, 자신의 초상권 침해를 동의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CCTV 촬영을 알고 있었으니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초상권의 촬영작성거절권과 공표거절권은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촬영된 초상이 이용되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본 사안은 언론의 알 권리인 공익과 사인의 초상권 침해 간의 비교형량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신청인측 - 정지원(성균관대 로스쿨)



본 보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굳이 CCTV 화면을 공개해야만 했을까요? 본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써 CCTV가 공개된 것에 대해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CCTV 화면 공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써 보도의 목적을 충분히 이룰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피신청인측이 이를 범죄보도라고 생각하고 보도함에 있어서, CCTV 화면 공개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한 삽화 및 해당 상황을 설명하는 기사 내용 등을 통해 충분히 보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신문에서 범죄 상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을 게재하는 대신 이를 묘사한 삽화를 대신 게재하여 초상권 침해의 문제없이 범죄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백보 양보하여, 본 보도에서 CCTV 화면의 게재가 불가피하였다고 하더라도, CCTV 화면에 도대체 왜 모자이크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까?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초상권 침해의 문제를 미리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함으로써 언론중재법 제5조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초상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기 때문에, 이는 언론사의 실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피신청인측 - 오정미(인하대 로스쿨)

신청인측은 CCTV 화면 공개로 인해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고, CCTV 화면을 공개한 보도는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청인인 교장의 체벌은 정도를 넘어서 과도한 체벌로써 이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다. 판례도 사생활의 자유와 알 권리가 충돌되는 사안에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를 보도의 기준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와 관련된 보도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초상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기사는 경찰의 수사가 개시된 범죄사실에 대한 보도이며, 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사의 학생 체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체벌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학생인권에 대한 고찰이 활발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본 보도 내용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이러한 중대한 관심사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언론의 역할을 다한 적법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인측 - 안지연(고려대 로스쿨)



피신청인측은 보도 내용 자체의 알 권리와 CCTV 공개를 통해 야기되는 신청인의 초상권에 대한 알 권리를 혼합하여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이는 명확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설령 피신청인측이 주장한 대로 당 사안의 체벌이 위법해서 보도되어야 하는 성질의 것이라면, 사안의 기사내용 자체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로서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CCTV 화면의 게재 자체는 단순히 독자들의 호기심을 야기하고 충족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알 권리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판례를 통해서도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던 신정아 씨 사건보도와 관련해서 신정아 씨의 알몸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였던 문화일보에 대

해 1심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기사게재 자체의 공익성은 인정하면서도, 관련 의혹을 밝히기 위해 해당 사진을 게재할 필요성은 없었고, 그것은 단지 당시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던 사안에 대해 선정적인 사진을 게재해서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신문 판매량의 증대와 같은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동기가 다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신정아 씨의 알몸사진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과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국민의 알 권리를 동일시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CCTV 화면의 게재는 국민의 호기심 자극에 불과할 뿐,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되는지도 의문이고, 단순한 국민들의 호기심 충족을 이유로 피해자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피신청인측 - 이민희(인하대 로스쿨)

신청인측은 문화일보의 '신정아 알몸 보도사건'을 예로 들며 단순히 국민의 호기심을 충족하는 정도로서의 알 권리는 초상권보다 우월한 보호가치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정아 사건이 여성의 알몸이라는 매우 은밀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보도임에 비해 이번 사안의 경우 학교장이 공적 장소인 학교에서 수행하는 공적 업무에 대한 보도이므로 상대적으로 신청인의 초상권은 보호가치가 작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CCTV 화면 공개가 신청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부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침해 정도가 비교적 적는데 비해 보도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피신청인측 - 오정미(인하대 로스쿨)

2011년 서울시 및 경기, 광주 등 여러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체벌로부터 학



생을 보호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육감, 학교장, 교직원 등 모든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하였

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에서도 체벌을 정당한 징계의 방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동법 시행령 제8항에서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금지하여 체벌을 위법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객관적으로 살펴봐도 허용의 정도를 넘어선 명백히 불법적인 체벌로, 학생이 받은 피해의 정도는 매우 심각합니다. 신청인은 학교장으로서 이미 복도에서 벌을 받고 있는 학생을 '또 너나'며 다분히 주관적인 이유로 머리 부분을 수차례 때렸으며, 이는 이미 자신의 잘못에 대해 벌을 받고 있는 학생을 이중 처벌하는 것으로서 교육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엉덩이나 허벅지 등이 아닌 머리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으로 체벌을 당한 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충격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신청인측 - 정지원(성균관대 로스쿨)

전통적으로 영미국가 및 유럽 등 서양문화권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체벌을 전면적, 절대적으로 금지해 오던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사랑의 회초리'란 말이 생길 정도로 스승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정당한 범위 내의 체벌권을 선생님에게 위임하여 오는 것이 우리나라의 오래된 교육의 전통입니다. 교사의 지나친 체벌이 문제가 되고 이를 금지하는 여론은 비교적 최근에 조성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체벌의 전면적 금지를 유지하던 영국에서조차 2010년에 영국 교육장관이 '노터치(No Touch)' 규정을 폐지하는 등 체벌 금지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권고적인 효력을 가질 뿐인 학생인권조례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항에서 학생의 징계에 관하여는 학교장이 정하는 학칙에 위임하고 있고, 2011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한다고 규정하여 각 학교가 학칙을 통해 이른바 훈육·훈계 수준의 가벼운 처벌은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조례보다 상위 법령에서 정당한 수준의 훈계 및 훈육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측 - 이민희(인하대 로스쿨)

교사의 처벌은 '전통'이라는 명목 하에 그 한계와 범위에 대한 고찰 없이 관습적으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가해자도 피해자도 처벌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져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모두가 둔감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학창시절 내재된 처벌에 대한 면역은 이후 군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발현되어 우리 사회 곳곳에

서 위계, 권력관계에 의한 폭행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피해의 정도에 비해 사회적 인식 변화의 속도가 더딘 문제들에 관해 언론은 일종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보도는 분명 신청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도는 학생의 인권이 무분별하게 침해받고 있는 현실을 사회에 널리 알려, 잠재적 피해자들에게는 자신의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고, 잠재적 가해자들에게는 경고를 함으로써 동일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청인의 초상권 침해도 중요한 사익이지만 해당 보도로 인해 보호받을 수 있는 학생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익적 측면은 이를 훨씬 상회하는 중요한 가치로서 적극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인측 - 정지원(성균관대 로스쿨)

피신청인측이 주장하는 이 사건의 처벌은 단지 통제불가능한 학생에 대하여 교장인 신청인이 꿀밤을 때린 것에 불과하여 정당한 훈

육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교권 추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무조건적으로 정당한 범위 내의 훈육까지 금지시키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학생들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및 교사들의 교육권까지 침해하게 되어 교권 추락의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교장은 공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 처벌이 정당한지 위법한지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어서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 보도로 초상이 공표됨으로써 폭력교장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리고 직업적 특성상 교육자로서의 회복할 수 없는 치명타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처벌 장면을 묘사한 삽화를 삽입하거나, CCTV 화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를 통해서도 보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상권을 침해한 것은 언론이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도의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측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명예훼손은 좁게, 사생활 보호는 넓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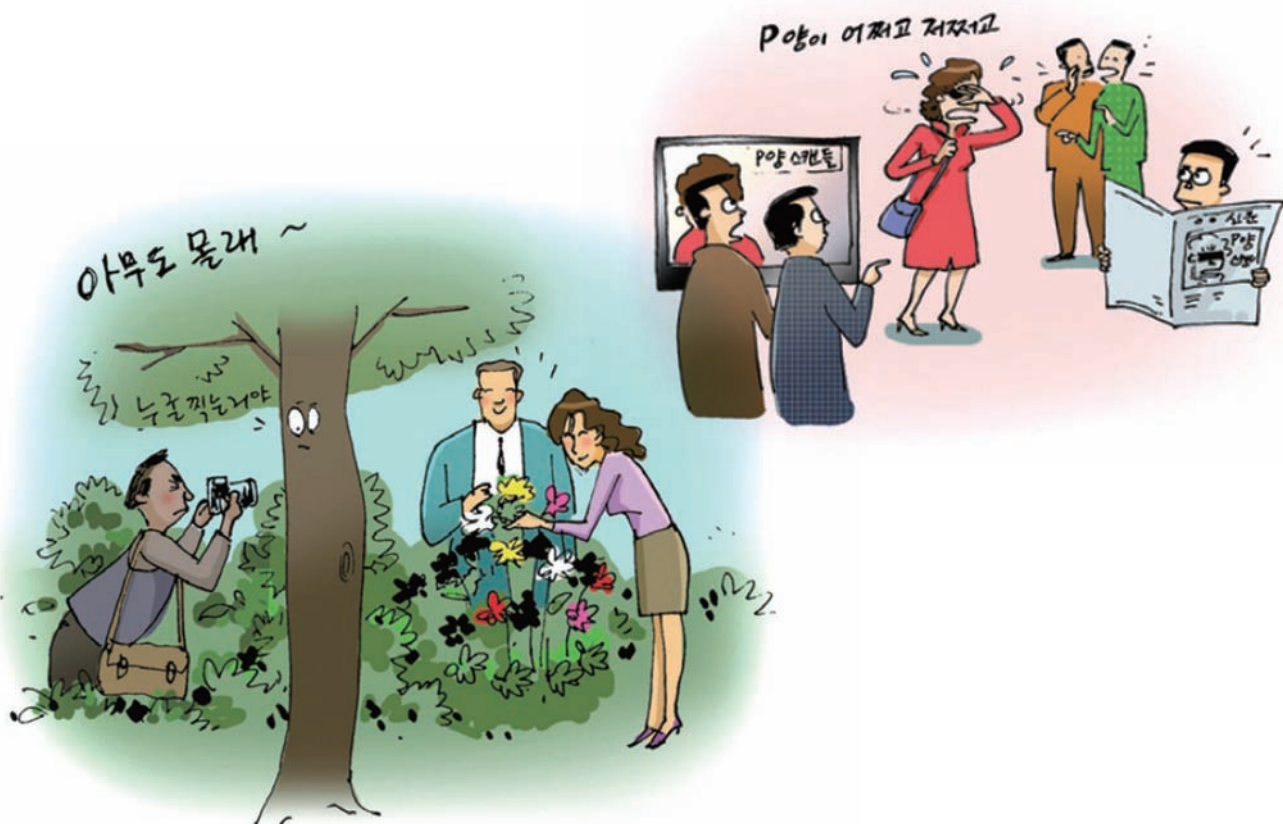


글. 양재규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기획팀장

교제 중이던 젊은 남녀가 갑자기 결혼을 서두르면 주변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 이렇게 말하곤 한다. “속도위반이구먼!”

최근 영화배우 신현준이 오는 5월 26일 결혼한다고 발표하자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신부의 임신으로 인해 결혼을 서두른 것 아니냐’는 추측을 담은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다. 관련 소식을 전하는 3월 17일자 어느 기사의 제목은 ‘갑작스런 결혼발표’ 신현준, 속도위반 질문에...였다.

우스갯소리겠지만 요즘 신부 뱃속 아기는 ‘혼수품’이라고까지 이야기한다. 성 개방 풍조 때문인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혼전임신 내지는 혼전성관계를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혼전순결을 운운하면



아주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 혼전 임신, 혼전성관계는 각종 영화나 드라마에서 소재로 다루어지고 어느덧 우리시대 자연스런 일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일 누군가 다른 사람의 혼전임신 사실을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인가? 문제가 된다면 명예훼손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생활 침해가 될 것인가? 실제로 이 문제가 쟁점이 된 사건이 발생했다.

지방의 한 교회 담임목사였던 A는 주일예배 광고 시간에 해당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 B의 딸 C가 혼전임신한 사실을 공표했다. 전 교인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B와 C의 실명이 언급되었으니 당사자들이 느꼈을 당혹감은 불을 보듯 뻔하다. A 목사는 'B 집사의 자녀 C가 결혼 전에 임신한 다음 결혼한 사실로 B 집사에게 정직 3개월의 시벌을 내리기로 결의하였다. 성경말씀에 집사는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 전에 임신한 것은 교회법으로 부덕한 일이므로 시벌한다'고 공표했다.

혼전임신 사실의 공표는 교회 집사였던 B에게 내려진 교회법 상의 징벌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굳이 'B 집사의 딸 C가 결혼 전에 임신했다'는 구체적인 사실까지 밝힐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A 목사는 자신의 행동이 악의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이유로 항변했으나 B와 C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급기야 형사재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 A 목사

대한 1심 판결이 지난 2012년 8월 22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선고되었다. 1심 법원은 A 목사의 명예훼손혐의를 인정,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11고단442). A 목사는 이러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창원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사안의 핵심은 'B 집사의 딸 C가 결혼 전에 임신했다'는 A 목사의 발언이 현행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 개념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는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은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 정의하고 '피해자의 특정', '구체적 사실의 적시', '사회적 평가의 저하', 이 세 가지를 핵심 구성요건으로 본다.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다고 판단하면 다음 단계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유무를 검토한다. 위법성조각사유란, 비록 명예훼손에 해당은 되지만 형벌이나 손해배상 등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없는 경우다. 이러한 위법성조각사유에는 명예훼손 특유의 조각사유인 공공성 및 진실성 유무(형법 제310조¹⁾)가 있고, 명예훼손 이외의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²⁾) 등이 있다.

A 목사에 대한 1심 재판 역시 같은 순서를 따라 진행되었다. 재판부는 우선, A 목사의 발언이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판결문에서는 A 목사가 소속 교인들 200-300여 명이 있는 가운데

- 1)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2)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고 하여 명예훼손 구성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A 목사 측은 발언 당시 B나 C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A 목사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검토된 것은 A 목사의 발언이 형법 제310조나 형법 제20조에 의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A 목사의 발언이 내용적으로는 진실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행동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받을 수만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었다. 또,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행위, 즉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역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원은 B 집사의 딸 C의 실명을 언급할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거나 시별을 내린 구체적인 사유, 즉 C가 혼전임신한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위법성조각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재판에서 놓친 쟁점이 하나 있다고 본다. 바로 명예훼손 구성요건 중 한 가지인 ‘사회적 평가의 저하’ 여부다. 다시 명예훼손에 대한 개념 정의로 돌아가보자.

명예훼손은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된 내용이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어야 한다. 이번 사안의 경우라면, A 목사가 공표한 혼전임신 사실이 당사자인 C, 나아가 그녀의 아버지 B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A 목사의 발언으로써 B나 C의 사회적 평가가 당연히 저하된 것으로 봤다. ‘당연히’ 저하된 것으로 봤다고 쓰는 이유는 이에 관한 별다른 설명이 판결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C가 결혼 전에 임신을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C의 아버지 피해자 B를 징계하였다고 공표한 사실은 명백한바, 피고인의 그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고...’

A 목사 측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법원 역시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A 목사의 발언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살폈고 굳이 당사자 C의 실명과 시별을 내린 구체적인 사유까지 밝힐 필요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발언의 공익성을 부정했다. 그런데 과연 혼전임신의 공개로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는 것은 사회 일반인의 의식을 기준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실한 사실일까?

현재 우리나라 언론법에서는 명예훼손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에 관한 일관된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지 못한 상태라고 본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반사회적 행동이나 성향을 보인다고 표현했다면 이것은 아무래도 명예훼손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명백한 범법행위가 아니거나 단지 비윤리적·비도덕적 행동에 그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혼전임신이나

혼전성관계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한편, 비윤리적 행동의 공개를 명예훼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데에는 또 다른 측면의 문제도 있다. 흔히 명예훼손이라 평가받는 행위나 대상은 나쁘거나 부정적인 것이 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일부 사람들이 나쁘게 느끼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명예훼손이라고 곧장 판단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혼전임신=나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은 혼전임신 내지 혼전성관계를 부도덕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사회 일반의 인식이 옳다면 혼전임신 사실의 공표는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 내 특정 그룹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부도덕하거나 심지어 죄악일 수 있지만 나머지 사회 일반인들에게 그것은 별일 아니기 때문이다.³⁾

아무튼 이번 사안에서 A 목사의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인정한 1심 재판부조차 해당 발언의 명예훼손성에 관해 다소 인식의 혼선을 가진 것 같은 정황을 그대로 옮겨본다.

‘요즘에 변화된 혼인이나 혼전임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혼전임신으로 인하여 다른 교인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반면,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 많은 사람에게 공공연하게 노출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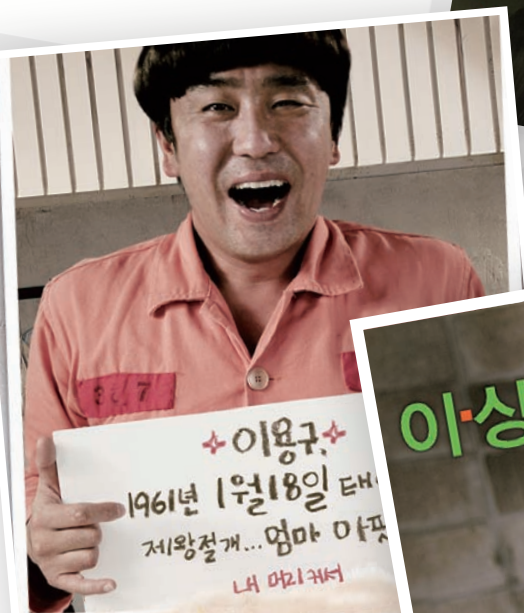
3) 이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법적 쟁점이 제기될 수도 있다. 누구의 시각에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다. 이번 사안의 경우, 피해자 B가 소속된 집단(교회) 구성원의 시각으로 본다면 명예훼손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 일반의 시각으로 본다면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는 불확실하다. 대상 판결에서도 이 점을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나름 연구해볼 만한 문제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이미 소문으로 상당수의 교인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사항이었고, 그 내용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의 것은 아닌 점 ... 등에 비추어 이번에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는 것처럼 혼전임신이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또,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의 내용도 아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이번 사안은 명예훼손이 아닌 사생활 침해의 문제로 보고 민사소송으로 다루었으면 좋을 뻔했다 싶다.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는 이번과 같은 사안에까지 명예훼손을 적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바람직한 법 적용이 아니다. 그러다 보면 명예훼손으로 다루는 영역이 지나치게 넓어져서 사생활의 비밀이나 초상권 등 기타 인격권이 설 자리를 잃기 쉽다. 이미 우리나라 전체 언론분쟁사건의 90%를 명예훼손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이러한 법 체계적인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라도 명예훼손의 적용범위는 좁힐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명예훼손에 해당되면 형사처벌의 가능성까지 동반되기에 명예훼손은 가급적 명백한 불법적 결과나 반사회적 행위로 국한하는 것이 좋다. 그 밖의 나머지 문제는 기타 인격권 침해, 즉 사생활의 비밀이나 초상권, 성명권, 신용훼손 등의 문제로 다루어 민사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2013년 첫번째 기적
7번방의 선
1월 23일, 흥행강 '류승룡'의 변신을



법률가가 본 영화, '기쁜바람의 선물'



글. 양려원
변호사(법무법인 인터로)

“영화 좋아하십니까?”

“네, 싫어하진 않죠.”

“법률가로서 영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보죠. 법률가라고 다를 게 있겠습니까?”

“법률가의 입장에서 영화를 이야기하신다면요?”

“...”

우연히 법률가로서 영화를 이야기하게 되었다. 걱정이 되었다. 중국 무협영화나 돈 꽤나 쏟아 부은 통쾌한 액션 영화를 보며 세상 일 잊어버리기 일쑤인 내가 법률가로서 영화를 말해야 한다니! 얼핏 생각해도 쉬운 일이 아니다.

‘차라리 소장을 더 쓰라면 쓰지. 이거야 원...’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재미난 일일 수 있다. 법률가임을 잊게 했던 영화 속에서 법을 발견하는 일은 색다른 맛이 있을지 모른다. 수동적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나만의 법률적 의견을 덧붙인다면 영화를 보는 또 다른 시선이 되지 않겠나? 게다가 잘못된 법리로 뜯금 없는 질문 공세를 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도 있으니 말이다.

나를 떠나 법률적 관점에서 영화를 보는 것이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보았다.

첫째, 대중예술의 경우 법적 상황이나 처리를 비틀어놓기 마련이어서 법리에 관하여 대중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한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재미로 보는 영화에도 메시지는 있고 그것이 법과 관련한 강력한 민중의 목소리라면 법은 이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경찰행정이나 검찰 등 사법불신에서 비롯된 목소리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법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셋째, 우리 영화를 위해서도 법률적 관점에서 검토는 필요하다. 우리 영화가 우리 자신의 얼굴이 되어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요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화에 담긴 우리 법문화는 뒤쳐진 것으로 묘사될 우려가 있다. 세계인이 보는 우리 영화라면 법률적 관점과 법문화 면에서 좀 더 꼼꼼히 구성할 필요가 있다.

법률가는 의뢰인과의 상담이나 재판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사건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직업이다. 하지만 요즘의 법률은 그렇게 특정 상황에 묶여있지만은 않다. 온갖 미디어에서는 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 이혼을 중재하는 재판정이 드라마 소재가 된지 오래고, 재판정이 배경인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기

도 하였다. 법률적인 사건들은 일상적이지 않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쉽고 판결에 이르기까지 드라마틱한 공방이 이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행하여지는 대부분의 재판들이 영화에서와는 달리 재미있기는커녕 오히려 따분하기만 해도 말이다.

법률가가 본 첫 번째 영화로 최근 흥행에 성공한 '7번방의 선물'로 정하였다. 어떤 의도, 그것도 영화를 평하기 위해 보는 것은 처음이지만 나름 '법률가의 관점'이라는 아이맥스 안경을 썼다.

눈물과 웃음이 켜켜이 놓인 영화였다. 딸바보인 나를 울리기에 충분했다. 감옥을 배경으로 다룬 영화 '그린마일'과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가 딸에게 보여주는 코믹한 모습에서는 '인생은 아름다워'의 비슷한 장면들이 떠올랐다. 법률가로서 인권문제, 형형문제, 사형폐지론, 증거조작, 증거재판 등 할 말이 떠올랐지만 어떻게 펼칠지 성글었다. 이 영화에서 법률 이야기를 제대로 한다면 '무슨 영화를 죽자고 보느냐' 할 것이 분명했다. 재미와 감동에 법률은 그릇만 제공한 형국이었다. 7번방의 선물은 법정 다큐멘터리가 아닌 것은 분명했다.

법률적 관점에서 영화를 다시 살펴보자. 어떤 쟁점이 있을까? 영화의 몇몇 장면들과 함께 이야기하려 한다.

여덟 살 예승이와 그 정도 지능의 아빠 용구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행복하다. 초등학교 입학 을 앞두고 눈여겨 봤던 세일러문 가방을 사기 위해 아빠의 월급날을 기다린다. 딸에게 사줄 마지막 남은 가방 때문에 용구는 가게에서 매를 맞는다. 매를 맞은 용구는 억울할 법도 한 데 영화는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용



구가 주장할 헌법상의 기본권과 형법상의 폭행죄를 묻는 일도 없다. 용구가 주장할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면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용구가 장애인인 아니었다면 그렇게 다짜고짜 폭력을 행사했을까? 법이 말하는 평등과 현실의 불평등은 그만큼 괴리가 크다. 영화는 우리 사회가 가진 고질적 병폐인 폭력을 전면에서 등장시켰다. 이후에도 폭력은 용구에 대한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교도소에 들어가는 때에, 그리고 항소심 공판 기일에도 반복된다. 그러한 폭력에 대하여 영화는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오히려 영화는 다른 감성적 장치들을 부각시키며 폭력을 이겨내게 한다. 재미를 위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영화에서나 이 영화에서나 폭력에 둔감해지는 것은 적잖이 우려된다.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경찰청장의 딸은 용구를 데리고 가방을 파는 곳으로 데려가고 아이는 시장 골목에서 미끄러져 사망한다. 응급조치를 취하려던 용구를 지나던 행인은 강간살인범으로 오인한다. 현직 경찰청장의 딸 살해범으로 용구는 체포되고 현장검증 등 수사가 이어진다. 강압수사와 증거조작으로 실제적 진실은 덮인다. 어눌한 용구의 말은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의 인권은 보호되지 않는다. 훗날 예승이가 사법연수원생이 되어 진행하던 모의재판에서 울부짖듯 항변한 것도 이 부분의 권리들이다.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다. 누구도 도와줄 사람 없는 용구에게는 더욱 필요했지만 오히려 더 무시되었다.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경찰청

장의 딸이 피해자인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그의 지휘를 받는 경찰관들이 과연 공정하



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 재판과 달리 경찰에 대하여는 제척이나 기피, 회피제도가 없다. 만약 경찰관이 사건 관련 당사자라면 공정한 수사를 위해 준비해둔 우리의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영화적 허구가 법과 제도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고 용구는 성남교도소에 갇힌다. 7번방 사람들을 만나고, 7번방 방장을 구한 대가로 딸 예승을 7번방으로 데려온다. 이제 영화의 주무대인 교도소가 등장한다. 하지만 사형수는 미결수용자로 구치소에 수감된다. 교도소는 기결수를 수용하는 곳이다. 따라서 기결수와 사형수가 함께 수용되는 않는다. 이러한 법 현실을 무시한 영화는 아이를 몰래 반입(?)하는 점점 더 기발한 환타지로 변한다. 영화는 오래전 미국 영화 <그린마일>의 환타지와 어느 면에서 닮아있다. 그린마일에 '그런 법이 어딴?'라고 묻지 않듯 7번방의 선물에 지나친 법률적 잣대는 필요 없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행형의 관점에서 이런 감방은 없다. 교도소 방도 그렇게 예쁘지 않

다. 물건이 마음대로 넘나드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까지 드나들 수 있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느 학교 기숙사도 저렇지는 않겠다.

교도소 보안과장의 묵인 하에 예승이가 교도소에 머물게 된다. 아이가 교도소에 가는 것, 그 설정을 위해서 영화는 법률이나 행형의 실체는 쉽게 포기하고 있다. 아니 포기해도 좋

다. 적어도 그런 교도소는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고 그래서 더욱 이런 상상이 필요했다고 해 두자. 그럼 아이가 교도소에 가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까? 정답은 가능하다. 여성 수형자에게 아기가 있는 경우 18개월까지 교도소에 함께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영화에서처럼 8세 여자 아이가 아

빠와 함께 있는 것은 법적으로나 실제에서나 불가능한 일이다. 역시 환타지! 패스~

용구가 무죄라는 것을 짐작한 7번방 사람들과 교도소 보안과장은 용구의 무죄를 위해 애쓴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국선변호인은 무기력의 극치를 보여준다.

“탄원서 넣는 것이 그다지 소용이 없더라고요.”

지친 듯한 변호사가 맥없이 말하고 교도소를 떠나는 장면이다. 탄원서를 넣는 것이 그렇게 소용이 없을까? 영화를 본 이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이다. 사형수의 국선변

호인이 저릴 수 있을까? 국민들이 느끼는 국선에 대한 반감은 어느 정도일까? 사실 사선 변호인에 대한 불만도 그 못지 않을지 모른다. 변호인에 대한 불만은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것일 것이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히 의뢰인의 말을 들어주어야 하는데 변호인은 모르는 말로 형식적인 행동만 한다고 생각한다. 변호사 입장에서 억울한 면이 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구술 변론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것을 문서로 말한다. 꼼꼼히 듣지만 의뢰인의 이야기에서 필요한 것은 사실확정이나 법률적인 쟁점 관련한 것뿐이다. 물론 국선변호를 맡은 이상 사선과 다를 바 없이 성심을 다해야 하는 것은 변호인의 의무고 책임이다. 하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할 국선변호에 있어 국가의 보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용구의 2심 재판은 예정대로 이어진다. 하지만 기일에 용구를 만나러 온 경찰청장, 그리고 그의 폭력 앞에 용구는 예승이를 지키려면 허위로 자백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과연 경찰청장이 재판 중에 있는 용구를 재판 직전 단독으로 만날 수 있을까? 답은 불가하다. 일단 재판장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변호인도 피고인을 만나지 못한다. 그리고 교도관이 입회하지 않는 만남은 없다. 영화의 허구는 이제 사형선고, 즉 용구의 죽음으로 정해진 수순을 밟는다. 지적 장애가 있는 용구가 진범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제에서는 사형선고 받기는 어려운데 말이다. 용구를 탈출시키기 위한 교도소 마당의 열기구도 환타지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쯤이면 그저 웃어도 좋다. 누구라도 불가능한 일인 줄 알 테니까.

〈그린마일〉과의 공통점은 등장인물이 여아 살



해범의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한다는 점에도 있다. 당시 사회의 보편적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겪는 부조리 불공정한 일들과 맞물려져 있다. 사회의 그늘 어두운 곳에서 스스로 밝히려 애쓰는 사람들에게 건네진 잔인한 법의 칼날은 몸서리치게 무섭다. 그 칼날이 무수한 오류에서 비롯되었음에도 폭력으로 이어지고 결국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는 제거대상이 된다. 법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잔인할 수 있나?

딸의 생일날 용구는 딸의 절을 받는다.

“저를 태어나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쁘게 절을 하는 어린 딸의 모습에 7번방 사관들이나 관객 모두 코끝이 찡해졌다. 그리고 용구에게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 오고야 만다.

이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이 행해지는 줄 알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제도적으로 사형제도는 있지만 실제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영화에서 용구에 대한 사형은 현재 우리나라의 법 현실에 맞지 않는 설정이다. 법 제도가 남아 있고 요즘 들어 강력범죄자들에게 범죄 예방적 효과와 응징의 수단으로 사형이 다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영화에서처럼 오판의 우려가 있고 사형된다면 돌이킬 수 없다. 사형제도 자체의 범죄 예방적 효과가 부족할 뿐더러 범죄자 역시 그의 생명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사형폐지에 내 마음이 기우는 것은 머리와 가슴이 그렇게 요구하는 까닭이다.

“그래서 용구는 무죄가 된 거죠?”

영화를 보고나오는데 아들 녀석이 물었다.

“사법연수원 모의재판에서 그런 판단을 한 것이라 아무 법적 효력이 없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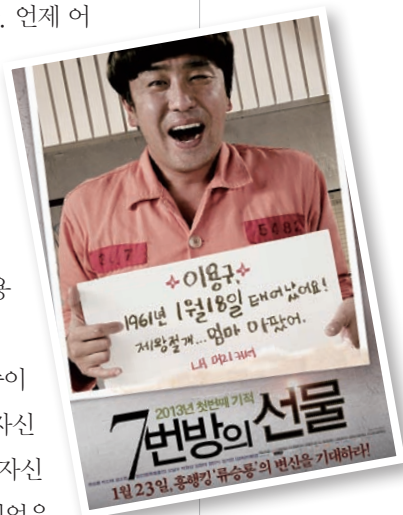
“그럼 재심 같은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아들이 알아듣든 말든 재심 이야기를 하였다. 영화가 어디까지 현실인지 구분 못하는 사람이 많겠다 싶었다. 이 영화에서 용구에 대하여 재심이 가능하려면 원판결의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되거나 무죄임이 인정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그리고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된 때에 소정의 청구절차에 의해 가능하다. 영화에서 재심이 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영화는 법률교육 매체가 아니다. 하지만 경찰과 형사소송의 실체에 대한 편견만큼은 사법 실체에서 지켜야 할 여러 원칙을 위한 교과서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또 영화의 환타지 영역에서는 어디까지 영화는 영화일 뿐, 법정 다큐멘터리가 아님을 상기하는 것이 영화를 즐기는 데에 도움이 되겠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 의해서든 진실의 꿈을 이루고 싶어 하는 마음을 포착한 데에 이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정의의 이름으로 아빠를 용서하겠습니다!”

세일리문의 말을 빌려 예승이는 허위자백을 택하고 결국 자신을 떠나간 아빠를 용서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아빠의 선택이었음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세상의 부조리를 더 이상 용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언론보도 손해배상 사건을 전담한다’

손해배상 전담 중재부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에서도 보듯, 말 한마디 잘못하면 천 냥 빚을 지기도 한다. 그릇된 보도나 과장 혹은 축소로 인한 왜곡보도, 한쪽 주장만 담은 편파보도, 취재 대상이 원치 않는 영상과 소리를 내보내 초상권과 음성권을 침해한 보도 등은 사회를 비추는 ‘빛’이 아니라 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언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빛’이 되어 돌아온다.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실질적 손해배상을 통해 언론이 사람에게 진 ‘빛’을 갚고 상호간 갈등을 해소하도록 지난 해 9월부터 손해배상 전담 중재부(이하 ‘손배 전담부’)를 설치, 운용해오고 있다. 손배 전담부 신설배경과 주요 손해배상청구사건 사례, 손배 전담부 운용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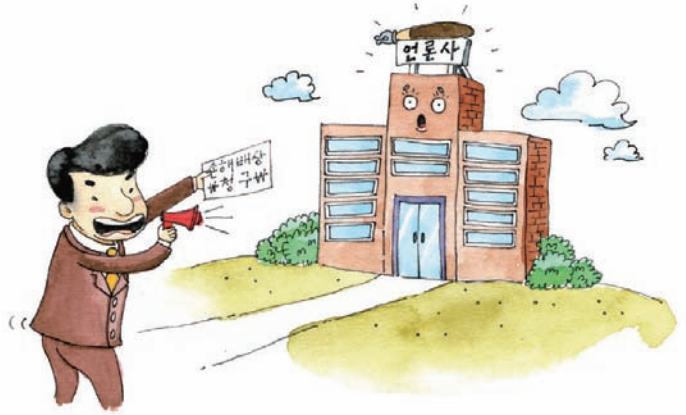
글. 박성희
이화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제8중재부 중재위원



손배 전담부 신설 배경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2005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 제정되면서 소송절차가 아닌 위원회의 조정·중재절차를 통해서도 피해의 배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이후 전체 조정청구건수 중 손해배상청구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29.3%, 2007년 33.5%, 2008년 34.0%로 점차 증가하다가 2009년에는 44.4%를 기록해 정정보도청구건수를 추월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구건수가 많다고 반드시 활발한 성과를 낸 것은 아니다. 통상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신청인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병합해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병합 청구된 사건을 심리하다 보면 신청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수용하겠다는 언론사들의 반응을 많이 보게 된다. 신청인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라도 얻어내려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반대로 언론사 입장에서 본다면 신청인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얻어낼 생각으로 무리하게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낼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가 조건부로 취급되거나 언론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이러한 현상은 손해배상청구를 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토록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보인다.

손해배상청구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모두에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적절한 위자료 산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위원회는 2011년 10월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그 결과물로 ‘손해배상액 산정 가감표’를 마련했다. ‘손해배상액 산정 가감표’는 해당 보도의 법익 침해 정도와 보도매체의 규모에 따라 기준 금액을 설정한 다음, 침해의 양태나 내용, 그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가감하는 방식의 위자료 산정 기준이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손해배상액 산정 가감표’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2012년 9월부터는 중재위원 중 손해배상청구사건 심리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로 ‘손배 전담부’를 신설하여 손해배상청구사건이 보다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전담토록 하고 있다.

“당사자
모두에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적절한 위자료
산정이
필수적”

주요 손해배상청구사건 사례

손배 전담부는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유형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처리했다.

‘손배 전담부’가 신설된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 현재까지 가장 높은 액수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진 사건은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으로, 모 방송사가 기획부동산 사기사건 관련 보도를 하면서 일반 분양사무실에서 정상 업무 중인 신청인들의 모습을 마치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과 관련 있는 것처럼 보도한 사건이었다. 해당 방송사는 사건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료영상을 사건 보도에 쓰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방송사 측이 신청인들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1,800만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된 사건이었다.

초상권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사건으로는 언론사가 절도 사건을 보도하면서 범죄혐의자들에 대해서는 모자이크 처리와 음성 변조를 하였으나, 절도 사건의 피해자인 신청인은 얼굴, 목소리, 이름, 집 등을 그대로 방영한 사례가 문제가 되었다. 물론 신청인은 본인의 초상과 성명 등을 보도해도 좋다는 동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심리 결과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어 이를 보도한 2개 매체가 신청인에게 각각 550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또 다른 초상권 관련 사건으로는 자살사건을 보도하면서 유족인 신청인들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여 신청인들에게 150만 원의 손해배상이 지급된 사건도 있었다.



성명권과 관련된 청구사건으로는 지난 해 11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당시, 대리투표 혐의로 검찰이 당원들을 불구속 기소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인 신청인들의 실명을 언급한 사건이 있었다. 손배 전담부는 공공의 알 권리를 위해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피의자의 실명을 보도한 것은 성명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음성권과 관련된 사건으로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원액기(쥬서기와 달리 과일을 짜서 즙을 내는 제품)의 문제점을 보도하며 쇼호스트(상품판매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인 신청인의 음성, 흐릿하게 처리된 얼굴, 손 등을 방영한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건이 있었다. 손배 전담부는 쇼호스트라는 신청인의 직업상 음성만으로도 신청인이 누구인지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 방송사의 음성권 침해를 인정해 100만 원의 손해배상이 지급되었다.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사건으로는 일 년 전 손해배상을 지급한 사건에 대해 다수 언론사들이 동일한 사안을 반복하여 보도함으로써 다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다.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들은 신청인에게 사실 확인을 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또 한 번의 손해배상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12년 최고액(1,000만 원)으로 조정된 손해배상청구사건인 이 사건은 언론사가 정보당국의

전언을 근거로 모 국가 대통령의 딸과 신청인이 결혼할 것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신청인이 전혀 사실무근임을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일 년 후 몇몇 언론사들은 관련 기사를 작성하며 사실에 대한 검증 없이 결혼설을 다시 한 번 보도했고, 심리 결과 언론사의 명백한 실수가 인정되어 언론사별로 각 3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다.

언론사들은 그 사건을 계기로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숙지하고 기사를 작성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고, 신청인은 단순한 기사삭제 보다는 정정보도를 통해 그릇된 정보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추후 관련기사가 보도될 때 동일한 오보의 반복을 막는 조치로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교훈을 얻었다.

손배 전담부 운용에 따른 기대효과

언론사들의 속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독자들의 권익의식이 향상될수록 손해배상청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그동안 축적된 연구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으로서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켜온 것처럼 손해배상 조정제도 또한 소송을 대체하는 분쟁해결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위원회가 손배 전담부를 운용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손배 전담부 중재위원과 조사관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손해배상 심리의 전문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손해배상청구제도가 언론중재법에 처음 도입될 당시 일부에서는 위원회의 전문성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손배 전담부는 이러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손배 전담부는 사안별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이를 축적해 나감으로써 조정자로서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명예훼손 등의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위원회가 이에 대한 원칙과 입장을 정리하여 합리적 기준을 세우고 이를 근거로 타협안을 제시한다면 당사자들의 수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셋째, 손배 전담부가 전문성을 갖추고 합리적인 조정을 지속해 나간다면 손해배상사건의 조정성공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손해배상사건의 조정성공률이 높아진다는 의미는 위원회를 통한 언론분쟁 사건의 일회적, 종합적 해결이 많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위원회를 통한 손해배상 조정제도가 소송을 대체하는 실질적인 조정제도로 정착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나 언론사 모두 win-win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기대한다.

“손해배상사건의 조정성공률이 높아진다는 의미는 위원회를 통한 언론분쟁 사건의 일회적, 종합적 해결이 많아진다는 의미”



초년생 사건기자가 고민해 본 디지털시대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기사 삭제 범위는?



글. 이대희
CBS 사회부 기자



들어가며

출입처인 경찰서 기자실에 있다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전화가 왔으니 연락을 해봐라”는 데스크의 전화를 받았다. 순간 덜컥했다. 일단 기자에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연락이 온다는 건 썼던 기사에 문제가 있어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야기다. 최근 썼던 기사들을 떠올려봤지만, 딱히 문제가 됐을 만한 기사가 생각나지는 않았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전화를 건 순간 의문은 풀렸다. 다행히 기사 문제로 전화가 온 게 아니라 기고를 부탁한다는 요청이었다. 기고 내용에 대해 물어보니 ‘디지털시대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기사 삭제 범위’라는 주제였다. 분량도 만만치 않았고 주제도 다분히 학술적인 영역이라 초년생 기자에게는 다루기 쉽지 않다고 판단해 처음에는 고사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기사를 쓰는 젊은 기자의 시각으로 생생한 내용을 담고 싶다는 담당자의 설득에 결국 이렇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다.

최근 ‘기사를 송고한다’는 행위의 의미는 과거에 비해 크게 확장됐다. 과거에는 신문기자는 지면에, 방송기자는 화면과 전파에 기사를 실어 보냈고 그걸로 끝이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기사 대부분이 인터넷에 송고된다. 이 기사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또 한 번 널리 퍼진다. 오래전 송고한 기사도 검색엔진을 돌려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필자는 이런 인터넷 시대에 기자 생활을 시작한 세대다. 초년생 기자의 짧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사 삭제’라는 민감한 주제에 감히 접근해보도록 하겠다.

나는 사건기자다

필자는 4년 차 초년생 사회부 사건기자다. 기자라는 직을 업으로 삼은 뒤 단 한 번도 사건팀을 떠나 본 적이 없다. 사건기자란 쉽게 말해 전통적인 기자직의 이미지에 부합한다. 사회의 가장 밑바닥의 사건들을 직접 발로 뛰어가며 취재하는 게 사건기자의 원칙이다. 사소한 팩트(fact)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이 팩트가 사실인지 취재하며 조금이라도 진실에 부합하는 기사를 쓰려고 노력한다. 또한 사건과 사고 이면에 숨어 있는 진실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누구보다도 먼저, 누구보다도 가까이 현장에 다가가야 한다고 배우고 있다.

사건·사고는 결국 사람들의 이야기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의 사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에서 일어난다. 화재, 교통사고, 붕괴 등



의 사고도 누군가의 부주의함 때문에 발생한다. 자연재해 역시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다. 지금까지 사건기자를 하면서 썼던 수많은 기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건기자들이 쓰는 기사에는 언제나 누군가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열려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진실보도와 인격권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형국이다. 취재한 팩트를 확인해 진실보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불리한 내용이 될 수도 있다. 또 기사를 읽는 독자들은 기사의 내용을 확정된 진실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인터넷 댓글을 읽어보면 가끔 머리가 지끈지끈 거리기도 한다. 독자들은 기사의 내용을 토대로 피의자, 심지어는 피해자에 대한 마녀사냥에 나서기도 한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오보’, 직접 당해보니

그러므로 기자들의 키보드는 무겁고 진중해야 한다. 거짓이나 편향된 시각을 기사에 담은 행위는 한 개인을 파국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흉기다. 따라서 오보는 범죄일 수도 있다. 잘못된 사실이 퍼져 나가면 대부분 돌이킬 수 없는 명백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오보는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기사화했을 때 발생한다. 서로 다른 두 주장에 대해서 양쪽을 충분히 취재하지 못하면 정확하지 못한 기사가 송고돼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필자 개인적으로 이런 피해를 당한 특별한 경험이 있다. 정확하지 않은 기사에서 출처에 성추행과 폭행을 저지른 파렴치한 사람으로 묘사돼 심적 고통을 받았다.

10여 년 전의 일이다. 기자가 되기 전, 당시 대학생이었던 필자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잠시 일을 하고 있었다. 주차단속을 하는 부서라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았다. 전화 욕설은 다반사에 직접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민원인들도 많은 곳이었다.

그날도 한 40대 부부가 와서 단속을 무마해달라고 생떼를 쓰기 시작했다. 담당 공무원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지만, 법으로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은 이 정도 설명에 포기하지만 이들 부부는 막무가내였다. 고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렸다. 심지어 남편은 주차를 했던 그의 아내를 타하며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다.

이를 말리는 공무원에게도 불뚱이 튀었다. 부부가 아버지뻘인 공무원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고성어 오갔고, 사건은 결국 폭행으로 이어졌다. 남편이 공무원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것. 필자를 비롯한 다른 공무원들이 남편을 말리느라 진땀을 뺐다.

결국, 경찰이 왔고 상황이 종결될 줄 알았지만 일은 더 커졌다. 욕설에다 주먹을 휘두른 이들 부부는 오히려 공무원과 필자가 자신들을 감금하고 집단폭행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 여성의 가슴 부위를 더듬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경찰에 주장하기 시작했다. 결국, 난생처음 경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이들 부부는 다음날 다시 찾아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선에서 일이 마무리됐다. 그런데 일은 끝나지 않았다.

이 사건이 기사화가 됐다. 통신사와 지역지 등 몇 개 언론에서 이 사건을 보도했다. 현장에 다녀간 기자가 없었는데 기사화가 됐다는 데 놀랐지만, 더욱 놀라운 건 기사 내용이었다. 부부의 주장만으로 기사가 작성됐던 것이다. 포털사이트에도 기사가 올라갔고 댓글에는 비난이 주를 이뤘다. 줄지에 필자와 공무원들은 성추행·폭행범으로 전락했다.

실명보도는 아니었지만, 해당 지자체의 이름과 담당업무가 기사에 반영됐다. 마음만 먹으면 공무원과 필자를 특정할 수도 있을 정도의 기사 내용이었다. 무엇보다 부정확한 사실관계, 한쪽의 주장을 기반으로만 작성된 기사였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기자에게 이메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주고 기사 수정이나 후속 보도를 요청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당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존재를 모르던 시기였기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생각도 하지 못해 한참 동안 분한 마음을 삭힐 수 없었다.

물론 오보 자체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지는 않았지만, 오보 탓에 한 사람이 어떤 심적 고통을 겪을 수 있을지 실제로 체험할 수 있었다. 기자가 되고 나서는 기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게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게 됐던 경험이었다.

특종이나 오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개인적인 경험 이외에도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오보의 사례는 무궁무진하다. 오보는 이른바 ‘특종 보도 경쟁’에서 종종 발생한다. 다른 언론사에서 입수하지 못한 자료를 토대로 보도할 때, 빨리 보도를 해야 한다는 욕심



이 원인이다. 입수한 팩트에 대해 여러모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지만 낙
 종할지도 모른다는 조급함에 오보는 발생한다.

지난 2009년 발생했던 일본 민영방송인 TV아사히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
 장 후계자 오보가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다. TV아사히는 2009년 6월 10일
 오전부터 당시 김 전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부각된 김정운의 사진을 단독
 으로 입수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진의 주인공은 북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한국에
 사는 남성으로 확인됐다. TV아사히는 전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고 결국 사과
 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 사진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한국 당국자와 북한 관
 계자의 확인을 받았다고 변명했지만 이미 었지른 물을 담을 수는 없었다.

절대로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 최악의 오보는 아예 없는 정보를 만들거나
 조작하는 경우다.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도 존재한다.

지난 1981년 미국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는 어머니의 정부(情
 夫)에 의해 헤로인에 중독된 8살 소녀의 일상을 심층 취재한 ‘지미의 세계
 (JIMMY’S WORLD)’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에 보도했다. 이 기사에 사회는
 분노했고 기사를 쓴 재닛 쿡 기자는 권위 있는 언론상인 폴리처상까지 받
 았다.

하지만 결국 이 보도는 날조로 드러났다. 재닛 쿡 기자는 폴리처상을 반납
 했고 워싱턴포스트는 사과보도를 해야만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위터게이트
 보도로 쌓았던 명성에 스스로 흠집을 낸 셈이 됐다.

다행히 아직 필자에게는 이런 중대한 오보를 날린 경험은 없다. 기자가 되
 기 전 경험과 수많은 오보 사례를 만면교사로 삼고 있다.

사실 보도도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사실을 쓴 오보로 피해가 가는 일도 있지만, ‘사실 보
 도’를 했는데도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긴다.

팩트를 여러모로 확인한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쓴 기사도 누군가에게 피
 해가 갈 수 있다. 이 때문에 앞에서 언급했던 취재윤리를 바탕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인격권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더 진실에 부합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는 게 기자들의 의무다.

사건기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사건기사가 그렇다.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
 은 상태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의 이야기를 사건기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기사화하고 있다. 이런 때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인용하는 형태
 로 아래처럼 보도된다.



사례 1

서울과 부산에서 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상습적으로 음식값을 빼돌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XX경찰서는 배달원으로 일하며 수금한 음식값과 오토바이 등을 훔친 혐의로 김 모(3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8월 XX구 XX동의 한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수금한 현금 40만원을 빼돌리는 등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서울과 부산 일대 음식점 22곳에서 1,4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경찰서 24곳에서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기사에서 피의자의 혐의는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진 것일 뿐 확정적인 게 아니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 법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 무죄로 확정되는 일도 있다. 이러면 실제 죄 없는 당사자들에게 기사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이다.

이른바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이 그런 경우다. 지난 2007년 5월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15살 소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하루 만에 한 노숙인이 주범으로 지목됐다. 이 노숙인은 숨진 소녀를 걸어서 한 시간 거리인 고등학교로 데려가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말 “수사기관의 회유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다”는 노숙인의 재심 청구에 결국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5년을 만기 복역하고 출소한 뒤 나온 판결이었다. 결국, 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노숙인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여기에 잘못된 수사 결과를 토대로 수많은 기사가 나오면서 이 노숙인은 두 번 고통 받았다.

사건의 피해자들에게도 기사는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특히 성범죄 기사나 자살 기사가 그렇다. 본인과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다시 떠오르게도 한다. 기사가 빌미가 돼 ‘신상 정보’라도 털리면 2차 피해까지 보는 일도 있다.

지난해 경찰 브리핑을 통해 썼던 기사가 그랬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한 한 여대생이 여관으로 옮겨져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었다. 경찰은 CCTV와 피해자,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마치고 언론에 브리핑을 했다. 기자들도 취재를 통해 기사를 송고했고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익명처리 등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썼다.

사례 2

새벽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OO경찰서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박 모(33)씨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혐의로 임 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19일 새벽 3시 40분쯤 XX구 XX동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A(27·여)씨를 임 씨 소유의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인근 여관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이들에게 납치당한 곳은 자택에서 불과 150m가량 떨어져 있던 곳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피해 여성이 남자친구에게는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여러 매체의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는 점이다. 여성은 사건이 발생한 뒤 남자친구와 함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조사 당시에는 이 여성은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익명보도였지만 보도 내용을 본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에 관한 기사라는 것을 즉각 알아차렸다. 같이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피해 여성은 2차 피해까지 받게 된 경우다.

고소·고발 사건에서는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일어나기도 한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첨예한 진실공방에서 엇갈리는 주장이 기사화되는 경우가 많다. 법정공방 끝에 결론이 내려지거나 합의로 종결되는 건이 대부분이지만 그 과정에서 생긴 피해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

최근 연일 언론에 오르내렸던 텔런트 박시후 사건이 이런 경우이다. 양측에서 진실공방을 하며 당일 오고 갔던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을 공개하는 등 진흙탕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공개된 내용은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다. 심지어는 언론 보도를 취합하는 ‘박시후닷컴’까지 나타날 정도다.

아직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박시후 씨는 텔런트로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고소한 여성도 이름까지 공개되는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 여기에 엉뚱하게도 사건과 관련 없는 한 여성이 피해자로 몰리면서 한바탕 소동까지 빚었다.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지금까지 나온 기사를 통해 두 사람과 함께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까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최근 1개월(2.28.~3.27.)간 박시후 씨
관련 기사는 3,044건에 달한다.



기사로 입은 피해, 구제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사례 이외에도 언론을 통해 피해를 보는 일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피해를 입었을 때 문제 제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1차적으로 언론사 자체의 판단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민감한 주제의 기사일 경우 자체 데스크 기능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대부분 언론사의 특성이다. 그렇게 기사가 나간 뒤에도 피해가 생기면 당사자는 대부분 일단 기자에게 연락을 시도한다. 요즘에는 기사 밑에 달린 이메일로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로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한다. 문제 제기가 정당하면 언론사 차원에서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게 된다. 언론사마다 이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대처를 한다. 필자도 가끔 그런 메일을 받는 때가 있다. 그럴 경우 데스크와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경험이 있다.

물론 모든 문제 제기를 언론사가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제기자와 언론사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는 제3자에게 제도를 통해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 밖에 경찰이나 검찰에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는 방법도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은 강제성이 있다. 이런 기관이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언론사는 기사 정정이나 삭제, 반론보도는 물론 금전적으로 배상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당사자와 언론사 사이에 합의로 종결되는 사례도 있다.

인터넷 시대, 달라진 언론계 풍경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기사와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들을 이런 구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2000년대 들어 초고속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발전했다. 2010년 이후에는 휴대가 쉽고 시공간 제약에서 자유로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SNS도 생활의 일부분이 됐다.

저널리즘의 풍경도 180도 변했다.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 기사는 유통기한이 있었다. 과거 언론보도는 신문 같은 활자 매체나 라디오·TV 같은 전파 매체에 국한됐기 때문이다. 기사는 신문이 폐휴지가 되거나 전파가 한 번 지나간 뒤에는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지면서 생명이 다했다. 굳이 도서관에 가서 과거 신문을 들춰봐야만 기사를 다시 읽을 수 있었다.

인터넷 시대에서 기사는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사실상 ‘영생’을 얻었다.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기도 하는 인터넷의 주 특성은 저장, 복제, 검색이다. 이를 통해 기사가 가졌던 시공간의 한계는 무너졌다. 이제 인터넷 매체는 물론이고 전통적인 활자매체나 전파매체까지 모든 기사를 인터넷으로 송고하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됐다. 필자가 기사를 쓰면 CBS 라디오, 노컷뉴스 홈페이지, 무가지 노컷신문을 통해 보도된다. 동시에 같은 내용이 주요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사이트 14곳에 동시에 송고된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블로그와 같은 SNS를 통해 기사는 기하급수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필자도 필자가 쓴 기사가 어디까지 퍼져 나갔는지 통제하기 불가능한 수준이 됐다. 이렇게 널리 퍼진 기사는 사라지지도 않는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과거 기사를 읽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필자가 기자가 된 뒤 처음으로 송고한 기사도 마음만 먹으면 지금 바로 볼 수도 있다.

인터넷 시대 이전 기사도 ‘부활’했다. 그동안 종이나 테이프 같은 아날로그 형태로만 존재했던 과거 기사가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있다. 한국 언론진흥재단은 <독립신문> 같은 폐간된 신문을 디지털화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언론사별로도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유료로 제공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강력한 건 검색포털 네이버가 운영하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다. 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한겨레 등 4개 신문의 지면을 창간호부터 1999년까지 모두 제공하고 있다. 신문지뿐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키워드 검색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다. 1920년대 동아일보의 기사도 키워드를 통해 검색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화되어 무료로 제공되는 독립신문

디지털시대, 잘못된 기사는 어디까지 삭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기사의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확산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검색까지 쉬워지니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일단 문제가 된 기사를 어디까지 삭제·수정해야 하는지가 질문으로 떠올랐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과연 잘못된 기사 모두를 고칠 수가 있는냐의 문제인 셈이다. 기사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앞서 언급했던 구제 방법들로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로 결정됐다 하더라도 미처 삭제하지 못한 기사 때문에 피해가 계속 남는다는 것이다. 보통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에 전송된 기사를 고치게 된다. 인터넷 초창기에는 이 정도만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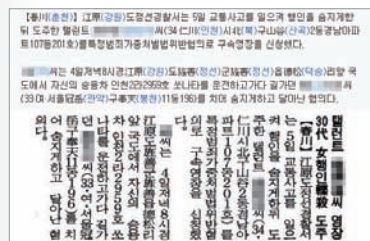
하지만 SNS가 발달하면서 환경이 바뀌었다. SNS의 특성상 이슈가 되는 기사는 사실상 무한대로 퍼져 나가게 된다. 이 기사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파악조차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고칠 만큼 고쳤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어딘가에 고쳐지지 않은 기사가 숨겨져 있다가 검색될 수 있다. 기사의 유효기간이 사라진데다 무한 확산성이 이 같은 숙제를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 번 피해를 받았고 제도를 통해 구제받았던 피해자가 또다시 피해를 받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이른바 ‘오래된 기사’의 문제도 발생한다. 기사가 인터넷에 송고됐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유통기간이 사라져 시간이 지난 뒤 검색을 통해 다시 세상에 드러났을 때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헌법 13조에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과거 사건기사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때는 이미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처벌을 받았음에도 2차로 사회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방송인 A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A씨가 1990년대 저질렀던 교통사고 관련 기사는 여전히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검색이 되고 있다. 검색된 기사에는 실명이 적혀 있다.

사진 1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검색된 A씨 기사



사례 3,4의 경우 실제 기사에서는
실명이 보도되었으나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익명 처리하였음.

사례 3

탤런트 A씨 영장, 30대 여 행인 역살 도주 (1991년)

강원도 정선경찰서는 5일 교통사고를 일으켜 행인을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탤런트 A씨(34·인천시 북구 산곡 2동 경남아파트 107동 201호)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4일 저녁 8시경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앞 국도에서 자신의 승용
차 인천2라2959호 쏘나타를 운전하고 가다 길가던 D씨(33·여·서울 관악구 봉
천1동 196)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다.

이 기사가 인터넷에 널리 유포되면서 당시 한 번 처벌을 받았을 A씨가 2차
처벌까지 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인터넷에 널리 유포됐던 '가수 B씨, 이명박 나비효과' 글도 대표적인 사
례다. 해당 글에는 네이버 라이브러리에서 검색한 가수 B씨의 간통 구속 기
사의 캡처 이미지를 통해 시작한다. 기사는 이렇다.

사례 4

가수 B군 간통 혐의로 구속 40대 유부녀와 간통 (1975년)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27일 모 건설회사 사장 부인 C씨(47·서울 영등포구
등촌동 193의 8)와 가수 B군(21·서대문구 응암동 450의4)을 간통혐의로 구속
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응암동 모 여관에
서 동침하는 등 작년 5월부터 서울 인천 등지에서 여덟 차례에 걸쳐 정을 통해
왔다는 것이다.

당시 B씨와의 간통 탓에 해당 건설회사의 사장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 자리를 당시 부사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꿰차고, 이후 탄탄
대로를 달려 결국 대통령까지 되는 나비효과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B씨는 소 취하로 풀려났다. 하지만 이 글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과거 받았
던 혐의가 드러나게 되면서 2차 피해를 받았다.

과거 기사에 적시된 개인정보가 뒤늦게 드러나 피해를 보는 유형도 있다.
[사례 3], [사례 4]에서도 동시에 발생하는 피해이기도 하다. 기사 형식은 시
대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1990년대 이전에는 개인정보 노출

사진 2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검색된
B씨 기사



에 대한 개념이 뚜렷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범죄 보도와 관련해 피의자와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를 모두 노출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런 관행은 1990년대 말 신원을 노출하는 보도가 공공성이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잇따르면서 보도 기준이 만들어진 뒤 사라졌다. 하지만 이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 기사가 지금 공개되면 문제가 커진다.

사례 5 (기사 내 실명은 가명 처리)

재산분배 불만 어머니 살해(1989년)

서울 관악경찰서는 13일 재산분배문제를 놓고 어머니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아버지를 폭행, 중태에 빠뜨린 김수명 씨(33 · 운전사 · 관악구 남현동 538)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0일 밤 11시쯤 부모가 평소 자신이 전과자라는 이유로 재산을 나눠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귀가, 분가를 해야겠다며 돈을 요구했으나 부모가 이를 거절하자 어머니 박점숙 씨(74)를 목졸라 숨지게 하고 말리던 아버지 고산 씨(77)를 마구 때려 중태에 빠뜨린 뒤 달아났다는 것이다.

위 기사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살인’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나온 기사들 가운데 무작위로 고른 기사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 기사가 보도된 1989년에는 익명 보도의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위 기사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2013년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위 기사가 다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포털사이트의 검색으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디지털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준 정립 시급

이렇게 매체 환경이 크게 변한 탓에 현재 존재하는 방법으로 피해 구제를 하기 어렵게 된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다. 이에 따라 이런 구제 방법들을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성이 제기된다.

1차적으로 언론사 자체 가이드라인의 정립이 필요하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언론사도 나타나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2006년 지면을 통해 피해 구제를 위한 내부 방안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최종심에서 무혐의 · 무죄 판결 ▲오보 ▲불필요한 개인정보노출 등에 관해서는 기



출됐던 사람이 온라인에서 기사를 지워달라고 할 때 이를 존중한다는 원칙이다. 지난 2002년 2차 연평해전에서 숨진 고 한상국 중사의 부인 김 모 씨의 요청이 계기가 됐다고 조선일보는 밝혔다. 김 씨는 기존 기사에 있는 자신의 사진과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지난해 말 요청했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도 당시 동의를 얻어 촬영했던 김 씨의 얼굴을 모자이크 하거나 영상을 삭제했다.

조선일보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 인터넷에 실린 기사를 수정·삭제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대응 요령도 결정했다. 오보는 즉시 삭제, 정정하고 요청한 이에게 통지하기로 했다. 오류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내부 협의를 통해 최장 30일간 온라인에서 임시차단 조치를 하도록 했다. 다만 인터넷이 아닌 오프라인 출판물의 정정은 최소화하는 원칙이라고 한다.

언론사의 가이드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치인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대상의 확대도 필요한 부분이다. 실제로 매체 변화에 맞춰 조정과 중재 대상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인터넷 매체는 2005년 하반기 시행된 언론중재법에 따라 조정·중재 대상에 포함됐다. 2009년에는 포털사이트와 언론사들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도 언론중재법에 적용을 받게 됐다.

앞서 언급했던 여러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매체 환경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정립할 때가 됐다. 일단 범위 문제가 있다. 조정과 중재 대상의 범위 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그 범위 확대는 충분한 논의 끝에 사회적인 합의로 결정돼야 한다. 무작정 대상을 넓힐 수는 없다. 언론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모든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이 조정과 중재 대상이 된다면, 부당한 권력이 정보통제를 위해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 수정 및 삭제를 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다만 사실에 입각한 보도라면 오래된 기사라고 하더라도 삭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가장 최근 사례는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조선닷컴 등 인터넷에 실리는 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1월 제정했다. 과거 기사에 노

수정과 삭제에 관한 결정도 신중해야 한다. 기사는 하나의 역사적 기록물 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오보도 역사의 일부’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어쨌든 언론의 자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오보는 결국 언론을 통해 오보임이 밝혀지는 사례가 많다. 이런 과정에서 최초의 오보 기사만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미래의 역사학자는 이 ‘미싱 링크’를 추리하는데 골머리를 앓아야 할 것이다. 디지털시대에 기사를 삭제할 때, 삭제된 인터넷 페이지에 삭제 사유와 함께 원 기사의 간략한 내용을 남기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수정될 경우 어떤 부분이 수정됐다는 내용을 남기는 것도 사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법일 수 있다.

기준을 정할 때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인터넷 공간에 널리 유포된 잘못된 정보를 모두 추려 수정·삭제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런 작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인력과 비용은 또 누가 감당해야 할지 정해야 한다.

‘잊혀질 권리’ 논의가 그 출발점

최근 이런 기준을 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바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다. 쉽게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잊혀질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지난해 1월 유럽연합(EU)이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잊혀질 권리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잊혀질 권리라는 말은 어느새 꽤 익숙한 단어가 됐다. 하지만 이 개념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현재 논의가 공회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잊혀질 권리의 범주는 크게 5가지로 ▲디지털 유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기사삭제 요구권 ▲게시글 삭제 요구권 ▲공공기록물 삭제 요구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다양한 범주 안에서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도 다르고 보호 영역에 대한 논란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가장 뜨거운 쟁점이 기사 삭제 요구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인격권 등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법학자 등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터넷법제 정비포럼이 운영됐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올해부터는 더욱 구체적인 문제를 짚어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아우를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글. 박도윤
CJ E&M(주) 법무팀 부장

들어가며

방송, 신문, 정기간행물(잡지 등),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사는 자사의 매체 영향력 또는 광고 수주 확대 등을 위해서 시청률 또는 구독률/열독률 등의 제고가 필수적인데, 이에 따라 동종 또는 이종 매체 언론사간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고, 언론의 공공성 또는 공익성,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명분은 '공인' 또는 '공적 인물'의 취재·보도 시에 더욱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앞세워지기도 한다.

특히 요즘과 같이 인터넷 언론의 기능(여기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모두 포함된다)이 활발해진 때에, 실시간 검색어로 대표되는 속보 경쟁과 선정적인 제목 달기를 통한 접속 유도라는 씁쓸한 현실은 다시 한 번 언론에 부여된 자유와 함께 그 책임과 한계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된다.

이에 필자는 조금 주제넘지만, 생존을 위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야생의 세계에서도 나름대로의 질서가 유지되는 자연 생태계의 법칙이 있듯이, 언론인들이 조금은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판례 등에 나타난 언론의 자유와 책임, 특히 '공인'에 대한 취재, 보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기고의 내용은 필자가 속한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관계가 없음을 밝힌다.

법률 규정에 있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 살펴보기

법에는 그 시대의 가치가 응축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에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어떤 가치가 응축되어 있을까?

먼저, 법 체계상 가장 상위법인 헌법을 살펴보자.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헌법 제2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같은 조 제2항에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언론의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 없다.

헌법은 언론이 자유로워야 하지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제21조 제4항)고 규정함으로써 언론의 책임에 대해서도 그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형법을 한번 살펴보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제307조 제1항)이 있지만,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개인의 명예 보다 공익적 가치가 더 클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위법성 조각)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타난 '언론의 자유와 책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까? 헌법재판소 누리집(www.ccourt.go.kr)에서 발췌한 아래의 결정문 내용도 언론의 자유와 한계에 관해 법률과 같은 맥락에서 실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누리집(www.ccourt.go.kr) 메인페이지



“언론·출판의 자유는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
며 이를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본 원리의 하나이다.” (헌
재 1992. 6. 26. 90헌가23, 판례집 4, 300, 306, 1999. 6. 24. 97헌마265, 판례집 11-1, 768,
775-776)

“개인의 언론 활동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라는 개인 대 개
인 간의 사적(私的) 관계에서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하나, 당
해 표현이 공공적·사회적·객관적인 의미를 가진 정보에 해당되는 것은 그 평가를 달
리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알 권리)는 개인의 인격형성과 자기
실현은 물론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하는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공적 성격도 아
울려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와 명예 보호라는 상반되는 헌법상의 두 권리
의 조정 과정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
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
自招)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
(알 권리)로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표
현 내용과 방식에 따라 상반되는 두 권리를 유형적으로 형량한 비례관계를 따져 언론
의 자유에 대한 한계 설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헌재 1999. 6. 24. 97헌마265, 판
례집 11-1, 768, 775-777)

즉, 언론의 자유가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인격권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두 권리를
유형적으로 형량한 비례관계를 따져 언론의 자유에 대한 한계 설정이 필요
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공인 관련 최근 판례에 나타난 ‘언론의 자유와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가 2011. 10. 12. 선고한 모 재벌 그룹 부회장
의 재혼과 관련된 판결 내용은 공인 보도와 관련하여 많은 점을 시사한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 청구 중 일부 정신적 손해배상금 및 기사 삭제를
인용하였으며, 피고들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법은 2012년 3월에 전부
기각하였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이다)

피고들(해당 인터넷 언론사와 기자들)의 주장과 법원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보도는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 경영인으로서 공인에 속하는 원고의 재혼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한 것인 바, ... 원고 2(신부측)는 실명과 초상 등이 기존의 언론 보도를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었을 뿐 아니라 원고 1과의 결혼이 예정됨으로써 공적 인물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는 원고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어서 적법하다. 설령 위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의 사생활이나 원고 2의 초상권 등이 다소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에 관한 보도로서 공적 인물인 원고들이 수인하여야 할 한도 내에 있으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법원 판결 요지

가. 원고 1은 이른바 '공적 인물'로서 국내의 유명 여배우와의 결혼 및 이혼을 통하여 그의 재혼을 둘러싼 사생활이 일반인의 지대한 관심을 끌만한 사항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 2 역시 원고 1과의 재혼에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일반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 바, ... 원고들의 상견례 사실과 결혼계획에 관한 일반적 사항, 원고들이 거주할 신혼집의 현황에 관한 사항, 원고 2에 대한 기본적 정보 등은 일응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들의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의 구체적인 분위기 등은 일부 사람들의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자체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특히 원고 2의 경우에는 원고 1과의 결혼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 1과 같은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대중적인 관심이 원고 2의 초상권보다 더 우월한 이익이 될 수도 없다. 또한, 원고들의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 등은 비록 그 관찰대상의 지점이 호텔 출입문 앞이나 주거지 앞 등과 같이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어 있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그곳에서의 원고들의 사적인 생활관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들이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불가침 상태는 여전히 보호될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 원고들의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의 구체적 분위기나 원고 2의 옷차림 등을 세부적으로 묘사한 내용 및 이를 촬영한 사진들은 원고들이 이를 타인에게 굳이 공개하고 싶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이며, 원고들이 위와 같은 취재 과정에서 자신들의 가족생활 내지 일상생활이 타인으로부터 단순히 관찰되는 것을 넘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진 채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이를 기록한 결과물이 사회 일반에게 노출됨으로써 받는 피해의 정도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법원은 위 판결에서 이른바 '공적 인물'과 관련된 사안에서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일반인들의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

만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들을 분리하고 있다. 또한 ‘공적 인물’과 연관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에 관한 대중적인 관심에 기반한 보도가 초상권보다 더 우월한 이익이 될 수 없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최근 판례를 보면 공인, 공적 인물에 대한 언론의 비판기능은 사인에 비해 폭넓게 인정되고 있고,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공인 또는 공적 인물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 제기가 널리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보도에 대해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아무리 공인에 대한 보도라 하더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범주를 넘어 지극히 사적인 영역까지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나가며

권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영상·사진보도와 초상권 침해’를 주제로 개최된 2012년 10월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에서 한 인사말 중에서 함께 생각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 다소 길게 인용한다.

“오늘 이곳을 오다가 양평 조금 못 미쳐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양수리(두물머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양수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다산(茶山) 정약용의 생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에 태어난 다산이 여러 면에서 선구자적인 삶을 산 데에는 태어나서 자란 주변 환경도 한 몫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강과 남한강이라는 두 개의 강이 만나 한강이라는 새로운 강을 이루어 흘러가는 모습 속에서 다산은 아마도 나라와 민족의 미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으리라 짐작합니다. 서로 다른 것이 만나 합쳐지고 새로움을 이뤄가는 것이 결국 세상의 이치일 것입니다. 이 점에서 저는 언론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언론을 이루는 하나의 큰 물줄기는 물론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인격권 보호’라는 또 다른 큰 물줄기가 면면히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물줄기는 결국 어디선가는 만나게 되어 있고 이 만남은 보다 크고, 넓고, 원대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됩니다.”



2012년 10월 25일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에서 권성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또한, 손기식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공인보도와 언론조정중재’를 주제로 개최되었던 2012년 11월 언론중재위원회·성균관대 공동토론회에서 상충할 수 있는 언론과 개인간 권리의 조화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언론이 입법, 사법, 행정과 아울러 국가의 제4부로서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때,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통제수단으로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같은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는 헌법의 정신에 따라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공인에 대한 언론기관의 보도와 관련하여 심오한 법리나 사례를 이해하고 설명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가 언론 취재 현장(특히 필자가 속해있는 회사의 연예뉴스 보도 등에서 경험한 바에 따라)에서 나름대로 고민했던 경험들을 되돌아보고,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기본 원칙에 대해 다시 되새겨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초원을 달린 다음 말머리를 돌려 잠시 기다리는데, 그 이유는 미쳐 뒤따라오지 못한 영혼이 쫓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국가와 사회가 부여한 언론의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도, 그리고 타사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취재·보도가 더욱 급한 것과 비례하여 침해되기 쉬운 공인과 사인의 인격권을 숙고하며 조화시킬 수 있는 시간과 역량을 언론인들이 함께 가졌으면 한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언론기관과 언론인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며, 돌아가는 것 같지만 멀리 그리고 함께 갈 수 있는 민주국가의 토대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글을 마친다.



언론통제와 언론자유의 갈림길에 선 중국



글. 윤기홍 중국통신원
중국 베이징대학 커뮤니케이션학 박사과정

10년 만에 권력 교체한 중국...시진핑 체제의 언론정책 향방 주목

올해로 건국 64주년을 맞은 중국은 개혁·개방 30여 년 동안 경제와 사회 분야에서 놀라운 성장을 했다. 세계 주요 2개국(G2)의 자리에 오른 중국의 경제력과 엄청난 인구(공식인구 13억 5,000만 명) 등에 힘입어 언론 분야도 양적으로 크게 발전했다.

중국 대륙에서 발행되는 신문은 약 2,000종에 달하고 있다. 하루 평균 신문 발행부수는 2억 부(연간 467억 부)를 크게 웃돌고 있다. 하루 발행부수가 100만 부를 넘는 중국 신문은 26개나 된다. 신문 발행부수 세계 100위 안에 든 중국 신문 수도 20개 가량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신문 대국'이다. 중국 신문사들은 세계 각국의 신문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유료 부수와 광고의 감소 같은 충격을 덜 받고 있다.

중국은 TV·라디오의 보급 범위와 이용자 수에서도 세계 선두로 올라 섰다. 1949년 건국 당시 49개였던 라디오·TV 방송국은 2,150여 개(TV 방송국 213개)로 급증했다. TV 수상기 보유 대수는 5억 대(디지털 TV 수상기 약 1억 7,000만 대)에 달하고 있다. IPTV 이용자는 2,250만 명을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엔 디지털 방송이 전면 개시될 예정이다. 동시에 전통적인 언론 매체들은 뉴미디어와의 융합에도 활발히 나서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규모 또한 세계 수위다. 네티즌은 올해 6억 명에 다가설 전망이다. 한 해 한국의 전체 인구 수만큼 급증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SNS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도 세계에서 가장 많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는 2009년 하반기 서비스 개시 이후 2년 여 만에 이용자가 3억 명을 훌쩍 넘었다. 웨이보는 정보 전파·획득과 여론 형성 면에서 전통 매체에 못지 않은 역할을 하면서 각광받고 있다. 중국판 카카오톡인 웨이신(微信)은 선보인 지 1년 만에 이용자 수가 한국 인구를 넘었다. 이동전화 가입자 규모는 11억 2,200만 명으로 다른 나라들을 압도한다. 중국은 스마트폰 세계 최다 생산국가이자 최대 시장으로 떠올랐다. 중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틀어 명실공히 '미디어 대국'이 된 셈이다.

중국 언론의 해외 진출도 최근 본격화 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경제력·국력 상승에 걸맞은 '소프트파워'를 갖추기 위해 인민일보(人民日報), 중앙방송(CCTV), 신화통신(新華通訊) 등 3대 관영언론의 해외

진출 지원에 450억 위안이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국가이미지를 개선하는 동시에 서방 언론에 맞서 자국의 시각과 입장을 전파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이처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언론의 화려한 겉모습의 이면에는 어두운 면이 깔려 있다. 바로 언론자유에 대한 억압이다. 중국의 언론자유 수준은 세계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중국은 아직도 언론검열·탄압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산당 정부는 언론사의 시장화·경영자율화·글로벌화를 추진하면서도 여전히 언론과 여론에 대한 통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전통 매체뿐 아니라 인터넷·SNS 매체에 대한 통제 수위도 높이고 있다. 언론의 취재와 편집, 보도는 아직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관례와 같은 언론검열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맞서 최근 들어 언론자유를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여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가 출범한 올해 들어서는 새해 벽두부터 지지자들이 당국의 편집권 침해에 반발해 집단파업을 하고 각계각층이 지지 시위를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러한 대규모 항의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남방주말', 검열에 반기를 든다

올해 초 당국의 기사검열에 반기를 든 곳은 중국 남동부 광둥성 광저우에서 발간되는 진보 성향의 주간신문 '남방주말(南方周末)'이다. 중국 주간신문 중 발행부수(매주 120만 부)가 가장 많고 영향력이 가장 큰 신문이다.

중국 언론계와 인터넷, 홍콩·대만 매체 보도를 종합해 보면, 남방주말은 지난 1월 3일자 신년 특집호로 '중국의 꿈, 헌정(헌법에 의한 통치)의 꿈(中国梦, 宪政梦)'이란 제목으로 신년 사설을 작성했다. 이 사설은 애초 헌법이 보호되어야 인민이 비판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런데 최종 신년 사설 제목과 본문은 공산당 통치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사설 제목은 시진핑 신임 국가주석 겸 총서기가 지난해 말 행한 연설 내용에서 따온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꿈에 다가가 있다'로 수정됐다.

남방주말 기자들은 성명서에서 광둥성 선전부의 튀전 부장이 다섯 차례 이상 수정 지시를 내려 비판적 내용이 모두 삭제됐다고 밝혔다. 전직 기자들도 튀전 부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가세했다. 광둥성 선전부는 다른 언론사와 행정기관에 남방주말 사태를 거론하지 말라고 지시하며 통제에 나섰다. 이는 남방주말 쪽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기자들은 파업을 단행했다.

남방주말 소식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면서 일부 시민과 대학생, 교수, 인권운동가, 작가, 유명 배우들은 남방주말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거나 온라인 상에서 지지 성명을 냈다.

중국 당국이 관례처럼 해 오던 기사검열에 맞서 기자들이 집단 파업에 나서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지지 시위를 하고 성명까지 내면서 호응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욱이 시진핑이 지난해 10월 공산당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물려받은 이후 중국 유력 매체가 당국의 언론검열 관행에 반기를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자 중국 내 차기 6세대 지도자 후보군 선두에 있는 후춘화 광둥성 공산당위원회 서기가 중재에 나섰다. 후 서기의 중재로 광둥성 공산당위원회는 선전부의 사전 기사검열을 없애며 파업 기자들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하고 기자들도 업무에 복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들은 파업을 이틀 만에 끝내고 정상 업무에 들어갔다.

그러나, 남방주말 사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다른 유력 언론에 대한 통제와 탄압으로 이어졌다.

남방주말 파업사태가 터지자 공산당 중앙 기관지인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월 7일자에 남방주말 기자들의 태도를 비판하고 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내용의 사설을 실었다. 공산당 중앙선전부는 전국 주요 언론사에 이 환구시보 사설을 신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베이징의 유력 일간지인 신경보(新京報)를 비롯해 후난성 창사에서 발간되는 소상신보(瀟湘晨報) 등 여러 신문들이 당국의 환구시보 사설 게재 압력에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신경보 쪽은 사장과 편집장이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거부했다. 하지만 베이징시 공산당 선전부의 폐간

위협에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다만 신경보는 환구시보 사실을 신문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최하단에 게재함으로써 항의의 뜻을 표했다.

남방주말은 2008년 3월 티베트자치구에서 발생한 티베트족의 대규모 시위 배경을 전했다가 주필이 면직되는 일을 겪었다. 2009년 11월에는 중국 언론 가운데 유일하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인터뷰에 성공하는 대형 특종을 거뒀으나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18일 중국 방문 중 인민일보·신화통신·CCTV 등 3대 관영 매체를 빼고 남방주말과 단독 인터뷰를 했다. 미국 쪽은 진보적 매체인 남방주말을 선택함으로써 중국 언론자유를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당국은 남방주말의 인터뷰 원고를 사전 검열했다. 그리고 인터뷰 기사를 1면과 인터넷판에 올리지 못하게 했다. 남방주말은 검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신문 1면과 인터뷰 기사가 실린 2면의 절반을 광고로 메웠다. 오바마 대통령과 인터뷰를 했던 주필은 이후 인사 조치됐다.

검열 관행은 개선되지 않아

남방주말 파업 사태 이후에도 당국의 언론통제는 위축되지 않고 계속됐다. 당국이 남방주말 사태 뒤 사전 검열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보도 통제와 검열 관행은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남방주말 사태가 발생한 시기인 1월 4일, 유력 역사전문 월간지인 연황춘추(炎黃春秋)의 인터넷 사이트가

'남방주말'을
비롯한 중국의
각종 신문



갑자기 차단됐다. 연황춘추가 '헌법은 정치체제 개혁의 공감대 인식'이라는 제목의 1월 신년호 사설에서 정치 개혁을 촉구한 내용이 문제가 돼 당국에 의해 웹사이트가 일시 폐쇄된 것이었다.

3월 초 열린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맞아 보도 검열이 강화됐다. 특히 올해 양회에서는 중국의 전·현직 지도부가 10년 만에 교체되고 시진핑 국가주석을 포함한 7명의 지도부가 공식 선출돼 언론통제가 부쩍 심해졌다.

남방주말 기사검열과 파업사태를 촉발한 장본인으로 지목된 튀전 광둥성 선전부장은 또 다시 보도 통제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튀전 부장이 양회 개막을 앞두고 광둥성 지역 언론사에 광둥성의 경제사회발전 성과를 중점 보도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현지 기자들이 공개했다.

청두일보신문그룹이 쓰촨성 청두시에서 발행해온 역사전문 월간지 간역사(看历史, 2010년 '국가역사'에서 이름을 바꿈)의 경우 2, 3월호 배포가 중단됐다. 1월 25일 편집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웨이보를 통해 "운영 회사의 이유로 제작을 마친 2월 호가 나올 수 없게 되고 3월호도 제작이 중단됐다"고 공개했다. 이는 당국이 편집에 개입하고 편집장을 임의로 교체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4일 지린성 창춘시에서는 차량 절도범이 차 안에 혼자 있던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틀째인 6일부터 후속 보도가 크게 줄었다. 유족과 국민들은 경찰이 창춘 시내에 설치된 많은 감시 카메라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도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영아가 숨졌다고 비난했고, 이에 당국이 후속 보도 금지를 지시한 결과였다.

중국 정부가 2008년 3월 티베트족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이후 지난해부터 부쩍 늘어난 티베트인 분신 자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보도 통제 수위가 매우 높다. 당국은 관영 언론들조차도 보도하지 못하게 하거나 관영 신화통신에게만 간략하게 보도하게 하고 있다. 다른 매체들엔 신화통신 기사만 인용해 보도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다른 매체들이 자체 취재하거나 신화통신 기사와 다른 내용은 보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외국 매체도 언론통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중국의 언론통제와 검열은 외국 매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2년 전 중동발 '중국판 재스민 시위'와 지난해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 사건 등을 거치면서 외신 기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4월에는 십여 명의 주중 외신 기자를 불러, 가택 연금 중 탈출한 시카징애인 인권운동가 천광청(陳光誠) 사건 보도에서 관련 중국 법규를 어긴 데 대해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국 정부는 지난해 아랍권 최대의 위성 뉴스 방송인 알자지라(Al Jazeera)의 베이징 특파원(중국계 미국인)을 추방했다. 중국 정부가 정식 등록된 외국 기자를 추방한 것은 국가 기밀 누설을 이유로 1998년 독일과 일본 기자를 추방한 이후 14년 만이었다. 알자지라는 중국 당국이 후임자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아 베이징 영어 채널 지국을 폐쇄하게 됐다. 주중 외신기자클럽은 중국 관리들이 알자지라가 2011년 가을 방영한 중국 노동자들의 현실을 다룬 다큐멘터리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 왔다고 밝혔다.

이러 미국의 세계적 경제 통신사인 블룸버그(Bloomberg)는 지난해 6월 29일 당시 시진핑 국가부주석 일가의 재산 내역을 담은 문서를 입수해 심층 보도했다. 그 뒤 블룸버그의 인터넷 뉴스 사이트는 중국에서 한달 이상 접속이 안됐다.

최근 화두는 온라인

중국 당국이 요즘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는 곳은 온라인이다. 중국에서도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바탕으로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확산되면서 정보 흐름과 여론 형성 구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는 이른바 '만리장성 방화벽'으로 불리는 중국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웨이보는 당정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가장 먼저 폭로하는 장이 됐다. 전통 매체들이 보도를 외면하거나 놓치는 소식들도 웨이보에 오르고 있다. 웨이보로 대변되는 온라인이 공산당 정부의 언론통제에 가장 강력한 도전자가 된 것이다.

이에 중국 당국은 웹사이트 차단과 폐쇄 등을 통해 비판적 여론의 흐름을 봉쇄하고 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한 검색을 차단하고 있다. 또 트위터·페이스북 같은 외국 SNS를 차단하는 동시에 웨이보 만을 허용하고, 지난해 3월부터 '웨이보 실명제' 시행에 나섰다. 당국은 중국 최대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바이두, 웨이보 서비스업체인 시나·팅션·소후 등으로 하여금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민감한 콘텐츠를 삭제·차단토록 지시했다.

지난해 3월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의 해임 처리를 둘러싸고 중국 내 정변설·내란설이 퍼졌을 때, 정부는 소문의 근원지로 인터넷을 지목하고 일부 웹사이트들을 폐쇄했다. 그리고 시나와 텅션이 운영하는 웨이보 사이트에서 댓글 달기 기능을 사흘 동안 중단시켰다.

이를 위해 당국은 검열 실무자들을 이들 업체에 파견해 놓고 있다. 동시에 수 만 명으로 추산되는 사이버 담당 경찰을 두고 네티즌 동태와 콘텐츠를 감시하고 있다. 민감하고 비판적인 정보의 흐름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중국의 젊은이들과 지식인들은 웨이보 등 온라인 상에서 특정 사건과 유사한 단어나 은유적인 표현을 써서 당국의 검열 시스템을 피하고 있다. 아울러 네티즌들은 중국 당국의 특정 인터넷 사이트 차단과 검열에 맞서 가상사설망(VPN) 등을 써서 우회 접속하고 있다. 네티즌과 당국 사이에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구글은 2010년 초 자사 메일(gmail)에 대한 중국발 해킹 공격과 중국 당국의 검열 요구를 둘러싸고 중국 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이에 구글은 검색 서버를 홍콩으로 옮기고 중국 대륙 검색 시장에서 철수했다.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지난 3월 12일 발표한 '2013년 인터넷 적대국' 보고서에서 중국을 바레인·베트남·시리아·이란과 함께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체계적인 온라인 감시를 하는 국가로 꼽았다.

'공산당 중앙선전부', 언론통제를 주도하는 기관

그렇다면 중국에서 언론통제를 주도하고 있는 기관은 어떨까. 바로 공산당 중앙선전부다. 공산당의 선전과 언론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다. 홍콩 매체 등의 보도에 따르면, 과거 개혁파 자오쯔양과 후야오방 전 총서기 시절 당 간부를 지낸 일부 인사들은 그 동안 온라인에 공개한 서신에서 언론출판 자유를 요구하면서 보도를 검열하는 기관으로 공산당 중앙선전부를 지목했다. 이들은 중앙선전부를 '보이지 않는 검은 세력'이라고 지칭했다.

또한 중앙선전부 안에서는 1990년대부터 '열평조(阅评组)'가 언론검열과 통제를 주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시사주간지 아주주간 등의 보도에 따르면, 퇴직 언론인들로 구성된 열평조는 매체들을 평가·감독하는 '뉴스열평'이라는 활동을 통해 언론통제 조치에 관여해 왔다. 그 동안 많은 신문과 주간지·월간지의 정간, 간부·기자 해직, 사이트 폐쇄 조치 등의 배후에는 열평조가 있었다는 것이다.

중국 내 언론 정책 실무 담당 기관을 보면, 국가신문출판총서는 신문·정기간행물·출판물·온라인게임에 대한 관리·감독과 정책수립 업무를 맡아 왔다. 국가라디오영화TV총국은 라디오·TV·영화 분야를 관리해 왔다. 인터넷 분야의 관리는 2년 전 설립된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전담하고 있다. 국무원은 3월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를 맞아 정부 조직개편을 실시하면서 신문출판총서와 국가광전총국을 통합해 국가신문출판광과영화방송총국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5년 동안 당 선전담당 책임자였던 리창춘 공산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당시 공산당 공식 권력서열 5위)은 언론통제의 사령탑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향후 중국의 언론통제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인물은 최근까지 10년 동안 중앙선전부 부장을 지낸 류원산 신임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체서기)이다. 신화통신 기자 출신인 류 상무위원은 1993년 중앙선전부 부부장으로 임명된 이후 20년 동안 선전부를 이끌면서 언론통제와 검열을 주도해온 핵심 인물로 꼽힌다.

류 상무위원은 올 초 남방주말 기자 파업사태에 대해 중앙선전부 지침에 어긋나는 행동이므로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을 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류 상무위원이 3월 리창춘 전 상무위원에 이어 선전담당 책임자에 오르게 되면서 앞으로 언론통제 수위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 유력
역사전문 월간지인
연황춘주의 인터넷
사이트가
지난 1월 4일
갑자기 차단됐다.





중국 국가통신사인
신화통신의
웹사이트 신화망

시진핑 체제, 희망은 오는가

이런 가운데 올 3월 10년만의 중국 지도부 권력교체와 함께 시진핑 지도 체제가 공식 출범하면서 중국의 언론 상황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올해 들어 발생한 남방주말과 신경보 사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를 중심으로 한 5세대 지도부의 출범 이후 중국에서 처음으로 불거진 언론검열 항의사태다. 게다가 당국의 언론검열과 탄압에 다른 매체와 지식인, 시민들까지 동참해 항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를 두고 공산당 정부의 언론통제가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당국의 기사검열에 반발해 일어난 언론사 기자들의 파업 사태가 이례적으로 대화로 해결됐다는 점이다. 더욱이 중국의 유력 언론이 당국의 통제에 맞서 공개 집단파업을 벌인 끝에 전례 없는 '양보'를 얻어냈다.

지난해 10월 중순 시진핑이 국가주석과 당 총서기 직에 오르기 전 발생했던 언론검열 항의 사태들에 대한 처리 방법과는 크게 달랐다. 남방주말 사태의 대화를 통한 해결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가 언론검열과 통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언론자유를 일정 부분 허용하는 언론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와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리커창 총리 체제가 정치개혁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발했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율성 보장에도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신문 정책 책임자가 언론을 통제하는 '족색' 중 하나로 지목돼 온 '지방신문의 취재영역 제한' 조치

를 풀 가능성을 비쳤다. 류빈지에 국가신문출판총서 서장은 지난 3월 6일 양회 기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일부 지방 정부가 관할지역 언론사 기자의 타 지역 취재를 금지하고 있는 조치에 찬성하지 않는다"며 "기자의 타 지역 취재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공공 기관이나 공직자는 기자의 정상적 취재를 저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 내 언론계 종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지도부가 남방주말 사태 등에서 일시적으로 한 발짝 물러서며 양보를 했을 뿐 언론자유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거나 언론통제를 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좀 더 많다.

공산당은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언론은 공산당과 정부, 인민의 '목구멍과 혀' 즉, '대변자'이다>라는 언론관을 견지하면서 언론을 통해 사상과 여론을 지속적으로 통제해 나갈 전망이다. 언론통제를 완화할 경우 당과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공산당 지배체제를 반대하는 시위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공산당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는 남방주말 사태 이후 중앙선전부가 공산당의 언론통제 원칙을 재확인하고 나선 데서도 엿볼 수 있다. 중앙선전부는 남방주말 파업을 비판하면서 사회안정과 당의 영도를 위한 언론검열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류원산 공산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은 지난 3월 2일 열린 전국 선전부장 회의에서 언론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언론통제를 수행하라는 뜻을 단호하게 밝혔다.

다만 중국 당국이 언론통제의 수위를 조절하고 방법도 '합리적'인 형태로 '개선'해 나갈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지난 1월 광둥성 선전부는 남방주말 쪽과 가진 협상에서 기사를 직접 삭제하거나 고치지 않고 선전 당국이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규제 과정을 개선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방주말 쪽도 파업 직후 펴낸 신문에서 당이 어느 정도 언론을 규제할 수는 있지만 규제 방법은 시대 흐름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남방주말 기자들은 파업 전 낸 성명서에서 당이 제시한 원칙은 충분히 존중하지만 합리적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기사 삭제는 결연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10년 동안 중국을 이끌어 갈 시진핑 국가주석 중심의 5세대 지도부가 관례처럼 굳어진 언론통제를 그대로 이어갈지, 아니면 언론의 자율권을 서서히 보장하면서 언론자유를 일부 허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KBS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고충처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고충처리인제도를 심의 혹은 시청자서비스업무의 한 부분으로 취급하여 형식적 운영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는 다른 어느 언론사보다 시청자들의 알 권리 및 방송의 공공성을 중요시하고 있으므로, 방송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구제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KBS 고충처리사이트 : <http://office.kbs.co.kr/gochung/>



KBS의 **고충처리**,
이것이 다르다!



글. 윤종배
KBS 고충처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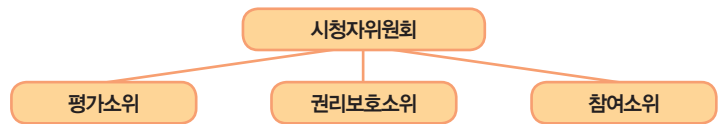
KBS 고충처리인의 차별성

KBS는 민원업무를 친절, 공정,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그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한 '민원사무처리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규정 제15조에는 고충처리인에 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많은 언론사가 이와 같은 고충처리인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KBS의 규정에는 다른 언론사와는 차별되는 조항이 있다. 'KBS의 고충처리인은 시청자위원회 권리보호소위 간사가 되며, 관련업무를 시청자위원회와 함께 처리할 수 있다'라는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3항이 바로 그것이다. 이 특별한 조항에서 말하는 시청자위원회 권리보호소위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며 어떻게 구성되는 것일까? 또한 고충처리인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까?

고충처리인과 시청자위원회

KBS 시청자위원회(이하 '시청자위원회')는 여러 시민단체에서 추천받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15인의 위원은 다시 평가소위, 권리보호소위, 참여소위의 3개의 분과에 배속되어 월 1회의 소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해 시청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권리보호소위는 명목상으로는 방송과 관련된 시청자들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한 소위지만 실제로는 KBS에 대한 시청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전달하는 일종의 올라운드 플레이어(all-round player)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권리보호소위에 배속된 시청자위원은 5명이다. 이 5명의 시청자위원과 고충처리인은 월 1회의 소위원회를 통해 1개월 동안 접수된 시청자들의 KBS에 대한 의견과 민원 등에 대한 폭넓은 검토를 하고(주로 시청자상담실에 접수된 시청자의견을 대상으

로 한다), 시정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주요안건을 선정하여 시청자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관련 제작 부서나 경영부서에서 후속 조치사항에 대해 시청자위원들에게 회신을 하고, 그 회신내용은 KBS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모든 시청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2013년 1월 권리보호소위에서 시청자위원들과 고충처리인이 검토한 시청자의견을 수렴하여 시청자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에 대한 회의록 내용 일부이다.

“...권리보호소위 본회의 상정안건. 회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본회의 안건상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방송에서 바른말 특히 정확한 표현을 써주시기를 부탁하는 안건입니다. 거기 예시되어 있듯이 “주문하신 커피가 나오셨습니다” 또는 ‘진검승부’, ‘이수라장’ 등 일본어 표현이나 부정확한 단어들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바른말, 정확한 표현에 좀 더 신경 써달라는 안건입니다. KBS에 지금 ‘바른말 고운말’이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의 바른말을 알려주는 데 좋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시간을 늘려서 방송을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안건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매달 시청자상담실로 접수되는 안건들을 계속 분석하고 있는데 자료를 살펴보면 상담건수의 94%가 전화로 접수되는 상담이고, 인터넷게시판을 통해 접수되는 건수는 6%에 불과합니다. 사실 요즘이 인터넷 시대인데 왜 인터넷으로 접수되는 내용이 적은가 분석해보았더니 많은 시청자들이 직접 프로그램 게시판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의견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프로그램이나 제작진한테 직접 보내는 의견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상담실 게시판에 들어오는 의견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직접 전달되는 의견들도 수집해서 전달해 주었으면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충처리인과 시청자상담실

한편 KBS 고충처리인은 시청자위원회 권리보호소위와는 별도로 KBS 고충처리사이트에 접수된 고충사안과 시청자상담실에 접수된 고충사안을 종합하여 매일 ‘시청자고충민원에 대한 조치 및 답변요청’이라는 문서를 관련 부서에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이나 조치사항을 회신 받으면 민원인에게 회신사항을 전달함과 동시에 KBS 시청자상담실(이하 ‘상담실’) 홈페이지 내 ‘제작진의 답변(고충민원 거의 대부분이 제작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이 코너의 이름을 ‘제작진의 답변’이라고 하였음)’란에도 게시하여 모든 시청자들이 KBS의 투명한 고충민원처리시스템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상담실에서 2012년 한 해 동안 처리한 시청자상담 건수는 총 739,818건이다(분야

별 : 방송 560,888건, 기술 30,965건, 경영 53,239건, 기타 94,726건). 이 중에서 프로그램 관련 정보 등에 대해 묻는 단순문의가 701,042건이고, 의견제시가 38,776건이다.

다음 사례는 상담실의 일일상담보고서(2013년 2월 19일)에 수록된 시청자의 불만의견과 이에 대한 제작진의 답변 내용이다.

방송 : 「한국인의 밥상」 「지난 100년의 기억을 찾아서 - 서울 토박이 밥상」
방송일시 : 2012. 1. 5(목) KBS-1TV (19:30~20:25)
불만의견 : 우리나라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볼 수 있어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한국인의 밥상」에서 소개된 'ㅇㅇ'이라는 설렁탕 가게에서 한우와 외국산 고기를 사용했다는 다른 방송사의 방송을 봤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소개된 내용과 너무 다른 방송을 보고 당황스러웠다. 앞으로는 치밀한 사전 조사 후에 업체를 선정해 주기 바람. 'ㅇㅇ'을 좋은 음식점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제작진의 답변을 받고 싶다.
※ 참고 : 2. 14(목) MBC 「불만제로 UP」 「제로맨이 간다 - 한우가 아니라구요?」에서 'ㅇㅇ'이라는 업체를 고발하는 내용이 방송됨
제작진의 답변 : 「한국인의 밥상」 제작진입니다. 1년 전 저희가 'ㅇㅇ'을 소개할 때는 분명 한우를 쓰고 있었습니다. 서울 토박이 분들을 통해 설렁탕을 제대로 오랜 기간 해온 곳을 추천받았고 그 중 'ㅇㅇ'의 경우 고기를 받아오는 정육점까지 확인할 수 있었기에 방송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전취재와 촬영당일에 납품되는 고기의 종류와 등급까지 확인했습니다. 그 식당의 고기품질을 방송 후에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인의 밥상에서는 가정에서 만들 수 없는 음식을 제외하고는 식당 취재를 자제할 것이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BS에만 있는 Real time, One stop 상담서비스

〈표〉 지난 3년간 KBS 고충처리 실적

연도	분야	편성	보도	스포츠	교양	연예	드라마	라디오	기술	경영	기타	총계
2010년		4	30	1	49	48	19	4	25	65	68	313
2011년		14	35	1	38	41	15	8	76	25	5	258
2012년		3	9	1	5	2	3	2	3	1	0	29

위의 〈표〉을 보면 예년에 비해 2012년도의 고충처리 건수가 대폭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KBS 제작진들이 제작 가이드라인 준수 등 프로그램 제작 단계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결과이겠지만 고충처리인의 입장에서는 상담시스템의 변화가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KBS는 2012년부터 시청자상담서비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고효율·고성능의 IT장비 설치 및 상담프로그램의 신규개발 등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One Stop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로 인해 상담실에서는 시청자들의 고충이나 불만이 접수되는 즉시 관련 부서에 이를 전달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해 담당부서의 입장이나 조치사항을 민원접수 당일 상담실에 회신하며, 상담실에서는 민원인에게 회신내용을 즉시 전달하는 고충민원의 Real time 처리시스템이 갖

추어졌다. 그리고 상담실에서는 시청자의 의견과 관련부서의 회신내용을 익일 상담보고서에 같이 수록하여 사내에 게시함으로써 시청자들의 고충민원에 대한 제작진들의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이처럼 시청자들의 고충을 상담실에서 즉시 해결하는 Real time, One stop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고충처리인이 문서를 시행하고 일정 기간 내에 관련 부서로부터 조치사항을 회신 받아 다시 민원인에게 전달하는 번거롭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과거의 처리과정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의 개선효과로 인해 2012년도의 고충처리실적이 대폭 줄어들게 된 것이라 여겨진다.

아래의 사례는 일일상담보고서(2013년 2월 22일)에 올라온 내용 중 상담실에서 처리한 Real time, One stop 상담서비스 사례이다.

방송 : 「KBS 뉴스7」 「코스피 2,024.64 코스닥 525.69」
방송일시 : 2013. 2. 20(수) KBS-1TV (19:00~19:30)
불만의견 : 증시 동향 보도에서 ㅇㅇ증권 양ㅇㅇ 직원이 “실적이 양호한 금융과 통신, IT업종의 지속적 관심이 유리해 보입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영방송 뉴스에서 특정 종목이 유리하다고 보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주가(株價)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 추측성 보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 참고 : (다시보기 1분 15초경부터) “미국과 유럽의 대외 불안요인이 여전하다는 점 ...종락... 실적이 양호한 금융과 통신, IT업종의 지속적 관심이 유리해 보입니다”라고 보도함.
상담실 답변 : 「증시 동향」은 ㅇㅇ증권과 계약을 맺어 진행하고 있음. 제작진이 시청자에게 직접 양해를 구하고, ㅇㅇ증권에 주의를 주기로 함. [보도국 뉴스제작부/ 정ㅇㅇ]

피해구제를 넘어 소비자 의견 수용까지

KBS 고충처리인은 방송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아니더라도 시청자들의 알 권리 차원 혹은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참여 차원에서 시청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제작진에 전달하고 있다. 방송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아니지만

시청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제작진의 입장과 의견을 회신 받아 시청자에게 전달하고, KBS 홈페이지 '제작진의 답변'란에도 게시하고 있다. 다음은 그 사례이다.

제작진의 답변 코너

제목 : KBS 제2라디오 [태진아 쇼쇼쇼] 진행방식에 대한 제작진의 답변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13. 1. 22]

진행자 태진아가 노래가 나오는 중간에 사연을 보내 준 사람들을 소개해서 노래를 제대로 감상하기 어렵다. 그리고 좋은 노래가 나오면 녹음하고 있는데 태진아의 목소리가 함께 녹음된다. 노래가 나오는 중간에는 진행하지 않길 바란다. 의견을 전했는데도 시청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작진의 답변을 바란다.

[KBS 제2라디오]의 답변

해피FM「태진아 쇼쇼쇼」는 제작 여건에 따라 평소 녹음과 생방송 두 가지 형식으로 방송됩니다. 녹음시에는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처럼 음악 송출 도중에 진행자의 중간 멘트는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방송으로 진행될 시에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청취자들의 의견을 전주곡이나 간주곡이 나갈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은 제작진과 청취자들과의 쌍방향 소통으로 제작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제작진은 실시간으로 보내온 청취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취자 여러분의 견해를 최대한 수용해 보고자 하는 과정에서 청취자들의 의견을 노래 중간에 삽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청취자들이 이런 진행이 생방송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생동감 있는 구성이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취자들의 취향에 따라서는 다소 의견을 달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음악과 진행자 멘트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프로그램을 청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충처리인제도의 미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KBS의 고충처리시스템은 상담실의 업무처리시스템이 개선되면서 고충처리인의 업무를 상당부분 자체 처리하면서 고충처리인의 업무에 변화가 필요함을 예고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고충처리인제도가 유명무실하거나 존재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은 아

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충처리인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언론피해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한다는 취지에서 고충처리인의 역할을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충처리인제도의 근본적 취지는 독자나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뉴스나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함으로써 독자나 시청자를 단순한 수용자가 아니라 언론제작의 일원으로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측면으로 확대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인쇄신문과 방송이 주도하던 기존의 매스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는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구분이 명확하였지만 이제는 상호작용적인 네트워크 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쌍방향적 소통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수용자의 미디어에 대한 영향력 확대라는 방향으로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변화해 감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고충처리인의 역할 또한 단순한 언론 피해의 예방이나 구제를 넘어 시청자의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언론이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선도적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 철학의 구현이 필요해

고충처리의 범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고충처리인의 역할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KBS는 고충처리의 범주를 넓게 보고 있으며, 그 결과 2013년 고충처리실적은 2월 현재 25건으로 2012년 한해의 실적(29건)에 육박하고 있다. 고충처리인의 역할이 확대될수록 그만큼 수용자와 생산자의 상호교감 내지 소통은 심화된다.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이 있다. 서로의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의 출발이고 사회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의 필수 덕목이다. 이러한 덕목을 선도해야 하는 것이 언론이고, 그러자면 언론 스스로 이를 언론 현장에서 구현해야 하고, 그 일차적 책무가 바로 고충처리인에게 달려있다. 고충처리인제도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는 고충처리인 스스로 역지사지의 철학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는 의식을 명확히 해야 하지만 한편으로 언론사 또한 고충처리인 임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역할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배려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정한 언론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언론중재위원회



언론피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언론중재위원회의 접수상담팀은
언론피해와 관련된 법률문제
전반에 걸친 종합적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범죄나
사회적 법의 또는 타인의 명예훼손사실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합니다.

불공정 선거기사 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기사의 편향을 방지하여
정기간행물의 공정치 못한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를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등의 게재 또는
경고·주의·권고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의 조정 및 중재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개인
단체 등으로부터 조정신청 또는
중재신청을 접수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교육프로그램이 확대되었습니다

● ADR 교육과정 및 언론피해 예방·구제 교육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중재를 비롯한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언론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해 출장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ADR 전문 교육과정

현직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이 조정·중재 실무, 설득·협상 커뮤니케이션, 언론대응기법 등에 관한 실질적인 분쟁해결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 언론 피해 예방 및 구제 교육

언론피해구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은 조정·중재사례 및 법원판례 등 언론보도 피해 및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조정·중재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대상 :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기업, 언론인, 대학(원)생 등

비용 : 무료

문의 : ADR 전문 교육과정 ☎02)397-3092~4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 교육

☎02)397-3062~4

